주간 규제 정보

Vol. 304

2020. 07. 20 ~ 2020. 07. 26



목차

국가기술표준원(http://kats.go.kr/)

1. 세계 청소년들의 표준화 경쟁, 온라인으로 본격 시작 ····· 3
2. 위변조 시험성적서, 효과적 근절을 위한 법령 마련 ····· 4
3. 전기용품안전기준 제개정 고시(전기차충전기, 리튬이차전지) ····· 4
4. 중소·중견기업의 혁신기술 국제표준화로 세계시장 진출 지원 ····· 5
5. 모든 해외리콜정보, 「행복드림」에서 한번에 확인하세요! ····· 7
6.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개정 고시 ····· 7

국립전파연구원(https://www.rra.go.kr/)

7. [보도]우리나라, ISO/IEC 국제표준 의장단에 진출 ····· 8

식품의약품안전처(https://www.mfds.go.kr/)

8. [대만] 식약서, '수입식품 및 관련 제품 수입검사 신청 면제 조건 및 적용 통관 코드' 초안 제정 예고 ····· 9
9. 식품안전 국가인증제로 식품 수출 지원한다. ····· 10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www.compass.or.kr)

10. 미국 콜로라도주, HFCs 규제 시행 예정 ····· 11
11. 중국, 감시대상 화학물질 목록 개정 ····· 12
12. 중국, 특별관리대상 유해화학물질 고시 ····· 15
13. 호주, 2021년부터 GHS 7차 개정판 적용 예정 ····· 17
14. 대만, 기존화학물질 표준 등록을 위한 지침서 발간 ····· 18
15. 중국, 식품접촉소재용 물질 신규 허가 ····· 19

KOTRA 해외시장뉴스(http://news.kotra.or.kr/)

16. 홍콩 공기청정기 시장 동향 ····· 21
17. 쿠웨이트 반려동물 사료 시장동향 ····· 25
18. 태국 광케이블 시장 동향 ····· 30
19. 코로나19 팬데믹 속 인도 인공호흡기 시장 동향 ····· 38

국가기술표준원(http://kats.go.kr/)

1. 세계 청소년들의 표준화 경쟁, 온라인으로 본격 시작

- 2020년 국제표준올림피아드 대회, 15년 만에 비대면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20년 국제표준올림피아드 대회 예선과 본선모두를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제표준올림피아드 대회는 올해가 15회째로 우리나라의 주도로세계 중·고등학생들이 표준에 대한 인식을 넓히고 미래의 표준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표준화 경쟁과 교류 장'이다.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등의 총회 및 위원회에서 표준교육의 우수사례로 소개되고, 미국, 중국, 일본 등 많은 국가로 부터 찬사를 받는 등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대회는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여 개최하는 만큼 대회의공정성을 유지하되 온라인의 장점과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여 다채로운 행사로 개최할 계획이다.

ISO, IEC, NIST(미국표준기술연구원)의 전문가가 본선대회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고 참가국 국가표준화기관의 자체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본선 개·폐회식에 ▲국제표준 문서작성 강의, ▲K-방역 국제표준화 특강, ▲K-컬처 축하공연 및 문화행사, ▲참가국별 온라인 장기자랑 등 부대행사를 포함하고 유튜브 등으로 생중계하여 세계의 청소년들이 참관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팀별 발표 동영상은 대회가 끝난 후에 국제표준올림피아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 청소년들의 표준화를 향한 패기·열정·아이디어를 공유하는 한편 학생들의 교육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예선은 국가별 표준화기관의 주도로 우리가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올 10월까지 각각 개최하여 본선 참가팀을 선발하고, 본선은 11월 중순에 한국의 주도아래 개최한다.

예선은 고령자·장애인, 건강·안전, 에너지·환경 등 5개 분야에서 생활 속표준화가 되지 않아 불편한 사례를 발굴하고 우수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팀을 서류·발표 평가를 통해 선발하고, 본선은 예선을 통과한 국내외 중·고등부 각각 20개 팀이 대회 당일에제시되는 과제*에 대하여 영어로 표준문안 작성 및 발표를 통해 최종 우수팀을 선정한다.

본선 입상자에게는 국무총리상(1팀), 산업부장관상(4팀), 국가기술표준원장상(4팀), ISO 및 IEC 사무총장상(2팀)등 상장과 부상을 수여하고, 입상한 우수 표준안은 추후 국제표준으로 도입될 수 있는지 국내외 전문가들의 세부 검토과정을 거치게 된다.

국가기술표준원 이승우 원장은 "국제표준올림피아드는 국제표준화 무대에서 표준교육의 대표적인 우수사례로 손꼽혀왔으며 한국의 표준외교력 확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하고, "이번 온라인대회를 계기로 더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하기를 기대하며,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에 있어서 또 다른 우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임을 밝혔다.

출처(국가기술표준원)

2. 위변조 시험성적서, 효과적 근절을 위한 법령 마련

- 「적합성평가관리법」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공청회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시험인증 관련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시험인증산업을 지원하는 「적합성평가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공청회를 2020년 7월 22일(수)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❶부정행위 시험성적서에 대한 법적조치, ❷KOLAS 공인기관 인정절차, ❸시험인증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등 주요 사항에 대하여 패널 및 참석자 토의를 통해 시험인증기관, 기업, 소비자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주요 내용은 시험성적서 신뢰성 제고를 위해 부정행위 유형을 정의하고, 사업장 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시험인증기관에는 조사에 필요한 자료 보관 의무를 부과하였다.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시험인증기관은 성적서를 취소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 방송 등을 활용하여 공표함으로써 부정성적서 유통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기술표준원 고시로 운영하던 KOLAS* 공인기관의 인정신청, 인정요건 및 인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구체화하였으며, 특히, 공인기관이 자격정지 처분을 받아야 하나, 시험수요를 감당할 다른 공인기관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과징금 부과를 신설함으로써 시험인증 공백으로 인한 선의의 기업 피해를 방지하도록 하였다.

*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국내 공인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 인증서가 해외에서도 통용될수 있도록 국제기준에 따라 시험인증기관의 역량을 평가해 보증하는 제도

또한 시험인증산업의 역량 제고를 위하여 시험인증 관련 실태조사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시설·장비의 고도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오늘 공청회에서 제안된 대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 후 2020년 8월 중에 입안예고할 예정이다. 국가기술표준원 이승우 원장은 “내년 4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적합성평가관리법」은 시험성적서, 인증서의 신뢰성을 높이고 시험인증산업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서비스 산업으로 성장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 강조하였다.

출처(국가기술표준원)

3. 전기용품안전기준 제개정 고시(전기차충전기, 리튬이차전지)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0-0138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전기용품안전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안전기준 제·개정 고시

1. 제·개정 이유

가. 전기차충전기(KC 61851-1, KC 62196-2) 개정

ㅇ 전기차의 배터리 용량이 커지고 사용자의 충전시간 단축요구도 증가됨에 따라 충전속도 향상을 위하여 안전기준 2종을 개정

나. 전지(KC 62133-2, KC 62133) 제정 및 폐지

ㅇ 휴대기기용 리튬이차전지에 해당하는 국제기준이 최신화 됨에 따라 국내 안전기준 부합화(기존 전지 안전기준 KC 62133 병행 적용 후 폐지)

ㅇ 속도 25km/h 이하의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에 탑재되는 전지의 별도 품목 관리(안전성 강화)

2. 주요 내용

1) 대상 전기용품안전기준

순번	구분	안전기준 번호	안전기준명
1	개정	KC 61851-1	전기차 충전시스템 제1부: 일반요구사항
2	개정	KC 62196-2	플러그, 소켓-아웃렛, 자동차 커넥터 및 자동차 인렛 - 전기자동차의 전도성 충전 - 제 2부: 교류 핀과 접촉 튜브 부속품에 대한 치수 적합성 및 상호 호환성 요구사항
3	제정	KC 62133-2	휴대기기용 밀폐 리튬이차전지 안전
4	폐지	KC 62133	휴대형 밀폐 2차 전지 안전

2) 주요 개정 내용

가. 전기차충전기(KC 61851-1, KC 62196-2) 개정

ㅇ 타입1(교류5핀) 충전방식에 대해 정격허용전류 상향*을 통한 충전속도 향상

* 타입1(교류 5핀) C형 연결에 한해 최대정격전류를 32A에서 80A까지 상향

나. 전지(KC 62133-2, KC 62133) 제정 및 폐지

ㅇ IEC 62133-2 및 KS C IEC 62133-2와 부합화된 안전기준으로 제품 안전성 시험에 대한 요구사항 및 시험 정의

- 단, 기존 KC 62133은 KC 62133-2와 '20년 12월 31일까지 병행 적용 후 폐지

ㅇ 속도 25km/h 이하의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에 탑재되는 전지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생활용품에서 완제품으로 관리되던 전지를 전기용품에서 관리하도록 적용대상 확대

- 단, 해당 전지는 '21년 8월 1일 이후 출고 또는 통관되는 제품부터 적용

부 칙

가. 전기차충전기(KC 61851-1, KC 62196-2) 개정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전지(KC 62133-2, KC 62133) 제정 및 폐지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기존에 고시된 안전기준 KC 62133(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9-0021호)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병행적용 후 폐지한다.

제2조(개인형 이동장치인 전기자전거와 유사한 장비에 관한 적용례) 1절 적용범위 비고 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기자전거와 유사한 장비(전기자전거 제외)는 2021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출처(국가기술표준원)

4. 중소·중견기업의 혁신기술 국제표준화로 세계시장 진출 지원

- 국제표준 전문가를 기업에 짝지어 주는「표준화 지원 매치업 사업」23일 발대식 -

중소·중견기업이 개발한 우수 기술을 국제표준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정부가 국제표준전문가를 기업과 일

대일로 짝지어 주는 「표준화 지원 매치업 사업」을 본격 시작한다.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20.7.23(목)서울 더 케이호텔에서 '국제표준 컨설턴트'로 선발된 표준전문가 26명, 국제표준화가 가능한 기술을 보유한 23개 기업, ATC 협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표준화 지원 매치업 사업' 발대식을 개최했다.

표준화 지원 매치업 사업은 지난 해 수립한 '4차 산업혁명 시대 국제표준화 선점 전략*'의 일환으로, 중소·중견기업의 국제표준화를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19.6.20.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
4차 산업혁명 10대 혁신성장 분야*의 우수 기술을 개발·보유한 중소·중견기업에 국제표준 전문가를 짝지어 주어, 해당 기술의 국제표준 제안에서부터 제정까지의 전 과정을 전담 지원한다.
* 자율·전기차, 에너지(수소 등), 지능형로봇, 스마트제조, 바이오·헬스, 드론·해양구조물, 스마트시티·홈, 비메모리반도체, 디스플레이, 스마트팜

국표원은 공개모집을 통해 국제표준화 활동 경험을 보유한 국제 표준 전문가 26명을 선발, 이 날 국제표준 컨설턴트로 위촉했다. 이번에 선발된 국제표준 컨설턴트는 미래차, 바이오, 지능형 로봇 등 4차 산업 분야에서 10여년 이상의 기술 전문성을 가지며 ISO/IEC 등 국제표준화기구의 의장·간사·컨비너 등으로서도 국제표준화활동 경험을 갖춘 은퇴 전·후 전문가들이다. 이에 국제표준전문가가 그간 현장에서 쌓은 경험과 지식을 중소·중견기업에 전수하는 연대와 협력을 이루는 좋은 사례가 될 전망이다.
* 국제표준 컨설턴트 위촉 현황(붙임 1)

국제표준 컨설턴트들은 매치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23개 기업과 이 날 매칭 협약을 체결하고, 표준화 지원 업무를 시작했다. 23개 기업은 '국가기술은행(NTB)에 등록된 우수 기술을 보유한 기업*'또는 '우수기술연구센터(ATC)**'로 지정된 기업 중에서, 국제표준화 가능성 및 시급성 등을 토대로 선정했다.
* NTB(National Tech-Bank, 국가기술은행) 등록 기술 : 204,574건 (´20.7)
** ATC(Advance Technology Center, 우수기술연구센터) : 566개 지정 (´20.7)
국제표준 컨설턴트들이 기업과 국제표준을 추진할 대표적인 과제로는 협동로봇 충돌방지기능 평가기술((주)뉴로메카, 이순걸), 바인더 젯팅 방식 적층제조물(3D 프린팅) 평가(삼영기계, 한순흥), 자율농기계 이력 데이터(긴트, 김경욱)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들을 포함해 23개 과제의 국제표준화를 전주기 지원한다.
* 매치업 사업 선정 기업 및 국제표준화 지원 기술명(붙임2)

국표원은 선정된 기업의 직원과 국제표준 컨설턴트의 국제표준화회의참가 여비를 지원하고, 더불어 국화를 위해 추가적으로 시험 데이터 등을 연구개발 해야 할 경우 표준기술력향상사업을 통해 지원 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표원은 국가기술은행(NTB)를 운영하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우수기술연구센터(ATC)협회, 한국표준협회 등 유관기관과 표준화 지원 매치업 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제표준 컨설턴트가 보유한 풍부한 표준화 경험과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를 중소·중견기업이 활용함으로써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혁신기술이 국제표준화로의 제안과 제정이 가속화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매년 20여 기업을 매치업 사업 대상으로 선정해 「4차 산업혁명 시대 국제표준화 선점 전략」이 종료되는 ´23년까지 100여개의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국제표준화 무대에 등장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출처(국가기술표준원)

5. 모든 해외리콜정보, 「행복드림」에서 한번에 확인하세요!

- 산업부·공정위·식약처, 해외 리콜정보'행복드림'에서 통합 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 원장 이승우)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위원장 조성욱),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처장 이의경),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 원장 이희숙)은 그동안개별 시스템에서 각각 제공해오던 해외리콜정보*를2020년 7월 24일(금)부터 '행복드림열린소비자포털'(이하 행복드림)에서 통합 제공한다고 밝혔다.

* 상품의 제조·판매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리콜 중 국내 소비자가 해외직구를 통해 소비하거나 소비할 가능성이 있는 상품에 대한 리콜정보

** 해외리콜 정보제공추이(건) : '17년 976 → '18년 3,386 → '19년 1,901

그동안 각 기관은 해외리콜정보 중 전기·생활 용품과 어린이제품은 국표원의 "제품안전정보센터", 식품은 식약처의 "식품안전나라", 가구·장신구 등 기타 제품은 공정위의 "행복드림" 및 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을 통해 소비자에게 각각 제공해왔다. 공정위·식약처·국표원은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부처간 협의 및 각 기관별 정보제공시스템의 연계작업을 거쳐,7월 24일부터 수집하는모든 해외리콜정보를 실시간으로 「행복드림」에 연계하여 통합 제공한다.

공정위는 그동안 환경부·국토부·식약처·국표원·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련 기관의 국내리콜정보*를 「행복드림」에 연계하여 통합 제공하여 왔고, 이번에 해외리콜정보까지 모두 통합하여 제공하게 됨으로써, 「행복드림」은 명실상부한 리콜·안전 분야종합포털로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 국내에서 생산、제조、판매하거나 수입한 상품(제품)에 대해 국내에서 이루어진 리콜

이번 통합 제공으로 소비자들은 국내 해외 리콜정보를 한 곳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어, 리콜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이 한결 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 확대로인해 해외직구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리콜 정보가 통합 제공됨에 따라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 확대로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해외직구 이용*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해외직구 시 리콜 통합 정보가 유용하게 활용되어,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해외직구 규모 : ('17년) 2조 2,435억원→ ('18년) 2조 9,717억원→ ('19년) 3조 6,360억원

[출처: 통계청, '17~'19년 온라인쇼핑동향조사]

출처(국가기술표준원)

6.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개정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0 - 146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2020년 7월 24일

국 가 기 술 표 준 원 장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개정 고시

1. 개정취지
 ㅇ 안전기준에서 인용한 표준명 변경 및 신규안전기준 제정에 따른 적용범위 변경을 반영하여 안전기준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ㅇ (이륜자전거) 현행 안전기준에서 인용한 반사경 KS표준 및 석면안전기준이 폐지되고, 대체 표준 등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인용 표준명 변경
 ㅇ (실내용바닥재) 제2부 '합성수지제 욕실 바닥매트' 안전기준 삭제
  -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인 '합성수지제품'에 매트류 제품이 포함되어, 욕실 바닥매트를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관리

3. 붙임자료
 ㅇ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40(이륜자전거) 개정전문
 ㅇ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67(실내용바닥재) 개정전문

4.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속서 67의 개정규정은 2020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출처(국가기술표준원)

국립전파연구원(https://www.rra.go.kr/)

7. [보도]우리나라, ISO/IEC 국제표준 의장단에 진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국립전파연구원은 ISO/IEC JTC 1주1)의 SC주2)29(멀티미디어 압축기술) 제37차 총회에서 임영권 삼성전자 수석과 김규헌 경희대학교 교수가 의장(컨비너, Convenor)으로 선출되었다고 밝혔다.

 ㅇ 이들은 각각 '시스템 작업반주3)'과 '협력 및 연락 자문반주4)'을 맡게 된다.

주1) JTC 1(Joint Technical Committee 1)은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Standards Organization)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가 함께 정보기술 분야 표준화를 총괄하는 합동기술위원회
주2) JTC 1 아래에 있는 분과위원회(Sub Committee)로서 국제표준안을 개발
주3)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전송을 위한 스트리밍과 저장 기술 표준을 개발하는 작업반
주4) 타 표준화 기구로의 연락과 의견 조율을 수행하는 자문반

□ JTC 1의 SC 29는 차세대 멀티미디어 분야인 영상?음성 압축기술 표준을 담당하는 분과위원회로서 방송?통신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및 가상·증강현실(VR·AR) 등 차세대 융합산업에 대한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주5) 중이다.

주5) 우리나라는 최근 5년간 개발된 국제표준 151개 중 72개, 인공 지능 및 가상·증강현실 관련 표준

화 등 총 82개 프로젝트 중 13개를 주도

○ 특히, LG전자, 삼성전자, SK텔레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카이스트 등은 영상·음성 압축기술 관련 표준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 많은 특허권료 수입을 얻고 있다.

□ 이번에 우리나라는 의장직 2석을 차지함으로써 차세대 멀티미디어 표준화를 위한 주도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국립전파연구원은 이번에 임명된 의장단의 국제 표준 활동을 지원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의 표준화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붙임 1. JTC 1/SC 29 개요 및 구조조정 주요 내용
2. JTC 1/SC 29 한국 주도 주요 표준화 성과 및 추진 프로젝트
3. JTC 1/SC 29 한국 신임 의장단 주요 이력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립전파연구원 한진형 사무관(☎061-338-443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출처(국립전파연구원)

식품의약품안전처(https://www.mfds.go.kr/)

8. [대만] 식약서, '수입식품 및 관련 제품 수입검사 신청 면제 조건 및 적용 통관 코드' 초안 제정 예고

공문 발표 일자 : 2020년 7월 15일
공문번호 : 위수식자 1091300955호
요지 : '수입식품 및 관련 제품 수입검사 신청 면제 조건 및 적용 통관 코드' 초안 제정 예고
의거: 행정절차법 제 154조 제 1항

공고사항
1. 제정기관: 위생복지부
2. 제정의거: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 30조 제 3항
3. 공고내용은 아래와 같음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30조 제1항 공고에 따라 검사 신청을 해야 하는 수입 제품은 판매용으로 제공해서는 안되며 금액, 수량이 다음의 조건에 부합할 경우 수입검사 신청이 면제됨. 수입 시 수입신고서 수입허가증 번호란에 통관코드를 기재해야 하며,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30조 제3항에 검사 신청이 면제되는 규정에 적합함을 성명해야 함

1) 대만 주재 각국 영사관 또는 외교 면책권이 있는 자가 자기 소비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코드는 DH000000000001이며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식품을 수입하고 그 금액, 수량이 2번 항목과 동일
(2) 식품용기를 수입하고 그 금액, 규격, 수량이 4번과 동일
2) 식품 및 관련 제품(정, 캡슐형태 식품 불포함)을 개인 용도로 수입할 경우 코드는 DH000000000002이며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정, 캡슐형태 식품: 일일 매 종류당 최대 12병(상자, 캔, 포, 봉)까지이며, 합계가 36병(상자, 캔, 포, 봉, 원래 포장에 한함)을 초과할 수 없음.
(2) 영유아와 성장기 영아 조제식품: 일일 합계 금액이 1,000달러 이하이고, 중량 6kg 이내. 한 종류의 제품이 분말형태인 경우 1인당 매년 수입량은 30kg을 초과할 수 없음.
(3) 기타 식품: 일일 합계 금액이 1,000달러 이하, 중량이 6kg이내(신고서 1장당 가격과 수량으로 계산)
3) 식품 및 관련 제품의 수입 시, 관세법 제52조에 부합하는 기존 화물의 재수출 관세 면제의 경우 코드는 DH0000000000003임. 수입 후 만일 용도를 변경하여 관세를 보완 납부해야 할 경우 방출 문서를 보완 검사해야 용도 변경이 가능함
4) 식품용기를 수입하여 개인 용도로 제공할 경우: 신고서 1장당 가격이 1,000달러 이하이고 규격 및 수량이 4건을 초과하지 않을 때, 또는 가격이 1,000달러를 초과하며 수량이 1건일 때 코드는 DH0000000000005임.
5) 상술한 신고서에서 제품명, 재질, 제조 브랜드, 제조업체, 산지가 동일해야 하며, 동일 제품명의 모든 로트, 제조일자(유효일자) 또는 (포장)규격의 총량을 포함해야 함
6) 식품첨가물 및 향료는 동 공고 통관코드를 적용받지 않음

(관련 정보)2020년 7월 15일 공고된 "수입식품 및 관련 제품 수입검사 면제 조건 및 적용 통관코드" 폐지 예고 (식약서, https://www.fda.gov.tw/TC/newsContent.aspx?cid=3&id=25086)

- 정보출처: https://www.fda.gov.tw/TC/newsContent.aspx?cid=3&id=26237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9. 식품안전 국가인증제로 식품 수출 지원한다.

- 시범사업 참여업체 선정 위해…7월 22일 설명회 개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우리나라 식품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수출식품의 안전성을 국가가 인증하는 **'식품안전 국가인증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 국가인증제의 주요 내용은 ▲수출 국가별 식품기준 등 맞춤형 규제상담 및 규제적합성 검사로 수출업체애로 해소 ▲수출입 국가간 검사성적서의 동등성 확보로 신속통관 지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한국형 식품안전관리 인증제 마련으로 글로벌 유통업계 진출 지원 등입니다.
- 우선, 업체 **맞춤형 상담**을 통해 식품 수출에 있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공장등록, 식품표시 및 안전기준, 통관절차 등 **수출 국가 규제 정보**를 **제공**합니다.
- 또한 **수입국**에서 별도의 안전 검사를 받지 않고도 수출제품이 **신속**하게 **통관**될 수 있도록, 국내에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규제 **적합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가**에서 **인증**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해외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글로벌 유통업체가 요구하는 해썹(HACCP) 기반의 품질경영시스템을 충족할 수 있는 **한국형 식품안전관리 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국제적 동등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 한편 식약처는 식품안전 국가인증제 사업 착수를 위한 설명회를 7월 22일 서울지방식약청(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에서 개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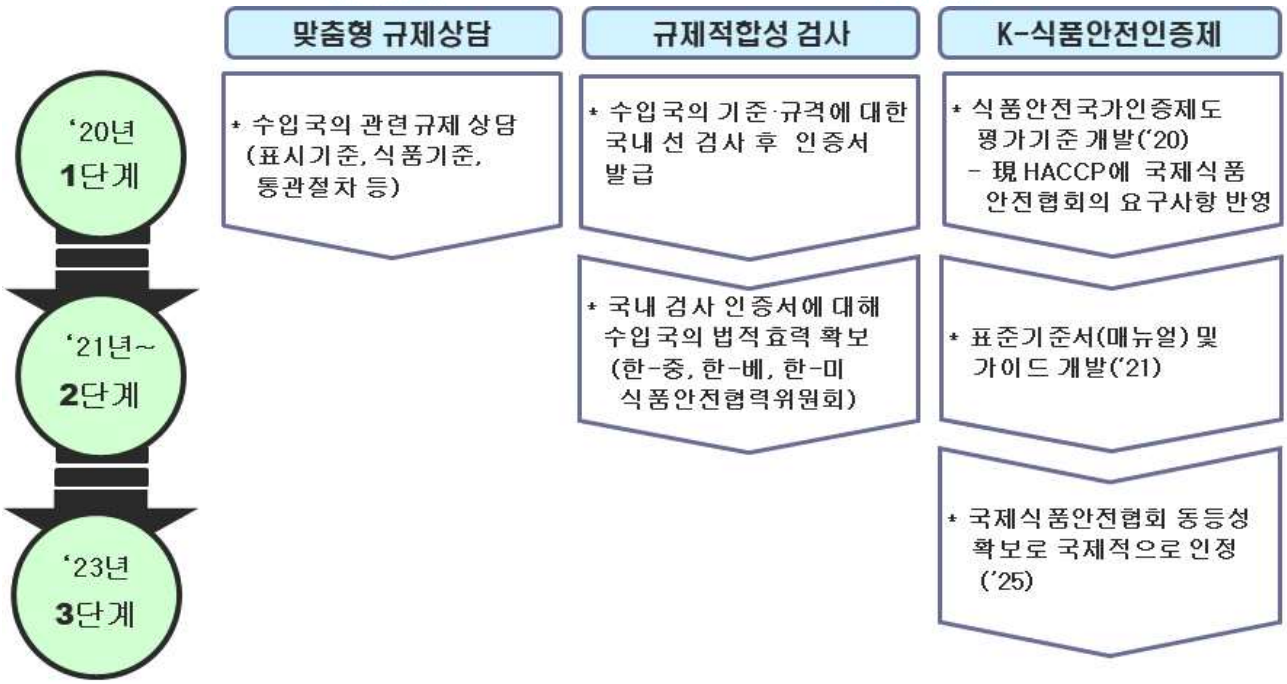
○ 이번 설명회는 브랜드 K 사업*에 선정된 19개 중소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식품안전 국가인증제**를 **소개**하고, 시범사업 **참여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 브랜드 K 사업: 유망 중소기업 제품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 공동브랜드 지원

- 시범사업 참여 업체에는 미국·중국·베트남 3개 국가의 **맞춤형 규제상담**과 **규제적합성 검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 식약처는 '식품안전 국가인증제'가 식품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식품안전 뿐 아니라 식품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붙임 1] 식품안전 국가인증제 개요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www.compass.or.kr)

10. 미국 콜로라도주, HFCs 규제 시행 예정

2020년 5월 14일, 미국 콜로라도주 보건환경부(Department of Public Health and Environment)의 대기 오염 관리 위원회(Air Quality Control Commission)은 수소불화탄소(hydrofluorocarbons, HFC) 규제*를 채택하였습니다.

* Regulation Number 22 Colorado Greenhouse Gas Reporting and Emission Reduction Requirements

본 법안은 수소불화탄소로부터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목적으로, 에어콘, 냉장고, 폼(foam), 에어로졸 압축가스(propellant) 등으로 사용되는 수소불화가스의 판매, 대여, 설치, 제조를 금지합니다.

사용 금지 시기는 아래와 같이 제품군별로 상이하나 늦어도 2024년 1월 1일 이전에 적용됩니다.
- 에어로졸 가스(propellant): 2021년 1월 1일
- 에어콘: 2024년 1월 1일
- 냉장창고: 2023년 1월 1일
- 가정용 냉장 및 냉동고: 2022년 1월 1일
- 가정용 냉장고 및 냉동고 (컴팩트): 2021년 1월 1일
- 가정용 냉장 및 냉동고 (빌트인): 2023년 1월 1일
- 수퍼마켓용: 2021년 1월 1일
- 자판기 (신형): 2022년 1월 1일
- 폼(Form): 2021년 1월 1일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 및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s3.eu-west-1.amazonaws.com/files.chemicalwatch.com/APCD_ERRATA_REG_CLEAN.pdf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주의> 본 뉴스는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출처(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

11. 중국, 감시대상 화학물질 목록 개정

2020년 6월 9일, 중국 산업정보기술부 (MIIT, China Ministry of Industry and Information Technology)는 감시대상 화학물질 목록 개정을 고시하였습니다.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 구분 1. 화학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화학 물질;
A. 유독물질
(1) O-Alkyl (<C10, incl. cycloalkyl) alkyl
(Me, Et, n-Pr or i-Pr)-phosphonofluoridates
예 : Sarin (CAS# 107-44-8) 또는 Soman (96-64-0)
(2) O-Alkyl (<C10, incl. cycloalkyl) N,N-dialkyl
(Me, Et, n-Pr or i-Pr) phosphoramidocyanidates
예 : Cyano(dimethylamino)phosphinic acid ethyl ester (77-81-6)
(3) O-Alkyl (H or <C10, incl. cycloalkyl) S-2-dialkyl
(Me, Et, n-Pr or i-Pr)-aminoethyl alkyl
(Me, Et, n-Pr or i-Pr) phosphonothiolates 또는 그에 상응하는 알킬화나 양성자화된 염
예 : Methylphosphonothioic acid O-ethyl S-[2-(diisopropylamino)ethyl] ester (50782-69-9)
(4) Sulfur mustards:
2-Chloroethylchloromethylsulfide (2625-76-5)
Mustard gas: Bis(2-chloroethyl)sulfide (505-60-2)
Bis(2-chloroethylthio)methane (63869-13-6)
Sesquimustard: 1,2-Bis(2-chloroethylthio)ethane (3563-36-8)

1,3-Bis(2-chloroethylthio)-n-propane (63905-10-2)
1,4-Bis(2-chloroethylthio)-n-butane (142868-93-7)
1,5-Bis(2-chloroethylthio)-n-pentane (142868-94-8)
Bis(2-chloroethylthiomethyl)ether (63918-90-1)
O-Mustard: Bis(2-chloroethylthioethyl)ether (63918-89-8)
(5) Lewisites
Lewisite 1: 2-Chlorovinyldichloroarsine (541-25-3)
Lewisite 2: Bis(2-chlorovinyl)chloroarsine (40334-69-8)
Lewisite 3: Tris(2-chlorovinyl)arsine (40334-70-1)
(6) Nitrogen mustards:
HN1: Bis(2-chloroethyl)ethylamine (538-07-8)
HN2: Bis(2-chloroethyl)methylamine (51-75-2)
HN3: Tris(2-chloroethyl)amine (555-77-1)
(7) Saxitoxin (CAS# 35523-89-8)
(8) Ricin (CAS# 9009-86-3)

B. 전구물질

(9) P-alkyl (H or ≤C10, incl. cycloalkyl) N-(1-(dialkyl(≤C10, incl. cycloalkyl)amino))alkylidene(H or ≤C10, incl. cycloalkyl) phosphonamidic fluorides 또는 그에 상응하는 알킬화나 양성자화된 염 예 : N-(1-(di-n-decylamino)-n-decylidene)-P-decylphosphonamidic fluoride (2387495-99-8) 또는 Methyl-(1-(diethylamino)ethylidene)phosphonamidofluoridate (2387496-12-8)
(10) O-alkyl (H or ≤C10, incl. cycloalkyl) N-(1-(dialkyl(≤C10, incl. cycloalkyl)amino))alkylidene(H or ≤C10, incl. cycloalkyl) phosphoramidofluoridates 또는 그에 상응하는 알킬화나 양성자화된 염
예 : Methyl (1-(diethylamino)ethylidene)phosphoramidofluoridate (2387496-04-8) 또는 Ethyl (1-(diethylamino)ethylidene)phosphoramidofluoridate (2387496-06-0)
(11) Methyl-(bis(diethylamino)methylene)phosphonamidofluoridate (2387496-14-0)
(12) Carbamates (quaternaries and bisquaternaries of dimethylcarbamoyloxypyridines)
Quaternaries of dimethylcarbamoyloxypyridines: 1-[N,N-dialkyl(≤C10)-N-(n-(hydroxyl, cyano, acetoxy)alkyl(≤C10)) ammonio]-n-[N-(3-dimethylcarbamoxy-α-picolinyl)-N,N-dialkyl(≤C10) ammonio]decane dibromide (n=1-8)
예
: 1-[N,N-dimethyl-N-(2-hydroxy)ethylammonio]-10-[N-(3-dimethylcarbamoxy-α picolinyl)-N,N-dimethylammonio]decane dibromide (77104-62-2)
Bisquaternaries of dimethylcarbamoyloxypyridines:
1,n-Bis[N-(3-dimethylcarbamoxy-α-picolyl)-N,N-dialkyl(≤C10) ammonio]-alkane-(2,(n-1)-dione) dibromide (n=2-12)
예 :
1,10-Bis[N-(3-dimethylcarbamoxy-α-picolyl)-N-ethyl-N-methylammonio]decane-2,9-dione dibromide (77104-00-8)

○ 구분 2. 화학 무기를 생산하기 위한 전구체로 사용될 수 있는 화학 물질;

A. 유독물질

(1) Amiton: O,O-Diethyl S-[2-(diethylamino)ethyl] phosphorothiolate 또는 그에 상응하는 알킬화나양성자화된 염 (78-53-5)
(2) PFIB: 1,1,3,3,3-Pentafluoro-2-(trifluoromethyl)-1-propene (382-21-8)
(3) BZ: 3-Quinuclidinyl benzilate (6581-06-2)

B. 전구물질

(4) Chemicals, except for those listed in Schedule 1, containing a phosphorus atom to which is bonded one methyl, ethyl or propyl (normal or iso) group but not further carbon atoms,
예 : Methylphosphonyl dichloride (676-97-1) 또는 Dimethyl methylphosphonate (756-79-6)
예외 : O-Ethyl S-phenyl ethylphosphonothiolothionate (944-22-9)
(5) N,N-Dialkyl (Me, Et, n-Pr or i-Pr) phosphoramidic dihalides
(6) Dialkyl (Me, Et, n-Pr or i-Pr) N,N-dialkyl (Me, Et, n-Pr or i-Pr)-phosphoramidates
(7) Arsenic trichloride (7784-34-1)
(8) 2,2-Diphenyl-2-hydroxyacetic acid (76-93-7)
(9) Quinuclidin-3-ol (1619-34-7)
(10) N,N-Dialkyl (Me, Et, n-Pr or i-Pr) 및 이에 상응하는 양성자화된 염
(11) N,N-Dialkyl (Me, Et, n-Pr or i-Pr) 및 이에 상응하는 양성자 화된 염
예외 : N,N-Dimethylaminoethanol 및 이에 상응하는 양성자 화된 염 (CAS# 108-01-0)
N,N-Diethylaminoethanol 및 이에 상응하는 양성자 화된 염 (CAS# 100-37-8)
(12) N,N-Dialkyl (Me, Et, n-Pr or i-Pr) aminoethane-2-thiols 및 이에 상응하는 양성자 화된 염
(13) Thiodiglycol: Bis(2-hydroxyethyl)sulfide (111-48-8)
(14) Pinacolyl alcohol: 3,3-Dimethylbutan-2-ol (464-07-3)

B. 전구물질

(13) Alkyl (Me, Et, n-Pr or i-Pr) phosphonyldifluorides
예 :
DF: Methylphosphonyldifluoride (676-99-3)
(14) O-Alkyl (H or <C10, incl. cycloalkyl) O-2-dialkyl
(Me, Et, n-Pr or i-Pr)-aminoethyl alkyl
(Me, Et, n-Pr or i-Pr) phosphonites and
그에 상응하는 알킬화나 양성자화된 염
예 :
QL: O-Ethyl O-2-diisopropylaminoethyl methylphosphonite (57856-11-8)
(15) Chlorosarin: O-Isopropyl methylphosphonochloridate (1445-76-7)
(16) Chlorosoman: O-Pinacolyl methylphosphonochloridate (7040-57-5)

○ 구분 3. 화학 무기를 생산하기 위한 원료로 사용될 수 있는 화학 물질:

A. 유독물질

(1) Phosgene: Carbonyl dichloride (75-44-5)
(2) Cyanogen chloride (506-77-4)
(3) Hydrogen cyanide (74-90-8)
(4) Chloropicrin: Trichloronitromethane (76-06-2)

B. 전구물질

(5) Phosphorus oxychloride (10025-87-3)
(6) Phosphorus trichloride (7719-12-2)
(7) Phosphorus pentachloride (10026-13-8)
(8) Trimethyl phosphite (121-45-9)
(9) Triethyl phosphite (122-52-1)
(10) Dimethyl phosphite (868-85-9)
(11) Diethyl phosphite (762-04-9)
(12) Sulfur monochloride (10025-67-9)
(13) Sulfur dichloride (10545-99-0)
(14) Thionyl chloride (7719-09-7)
(15) Ethyldiethanolamine (139-87-7)
(16) Methyldiethanolamine (105-59-9)
(17) Triethanolamine (102-71-6)

○ 구분 4. 폭발물 및 순수한 탄화수소를 제외한 특정 유기 화학 물질:

"특정 유기 화학 물질"이란 화학명, 구조식 (알려진 경우) 및 Chemical Abstracts Service 등록 번호 (이 번호가 제공된 경우)로 식별되는 산화 탄소 황화물 및 금속 탄산염을 제외한 모든 탄소 화합물로 식별되는 화합물 그룹.

구분 1 감시대상 화학물질을 생산하는 경우, 국가에 의해 엄격히 통제됩니다. 연구 개발, 의학용, 의약품 제조 또는 보호를 위해 생산하는 경우에는 물질승인을 위해 당국에 보고하여야 하고, 당국이 지정한 소규모 시설에서 제조하여야 합니다.

구분 2, 구분 3 및 구분 4 중 인, 황 또는 불소가 포함된 일부 감시대상 화학물질을 생산하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감시대상 화학물질의 사용, 수입 및 수출은 승인 후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원문)과 아래 웹사이트(원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miit.gov.cn/n1146295/n1652858/n1652930/n3757016/c7953686/content.html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주의> 본 뉴스는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출처(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

12. 중국, 특별관리대상 유해화학물질 고시

2020년 5월 30일, 중국 응급관리부 (MEM, Ministry of Emergency Management), 산업 정보 기술부 (MIIT, Ministry of Industry and Information Technology), 공공 보안부 (MPS, Ministry of Public Security)는 특별관리대상 유해화학물질 고시를 공포하였습니다.

특별관리대상 유해화학물질은 고유한 유해성이 높고, 사로고 인한 안전 위험이 크며, 사고의 심각한 결과

가 발생하고 유통량이 많은 화학물질로 선정되었습니다. 총 20개의 특별관리대상 유해화학물질은 아래와 같은 범주로 분류됩니다.

(1) 폭발성 물질 4개;

#	화학물질명	CAS번호	UN번호	주요 위험
1	질산암모늄	6484-52-2	0222 1942 2426	급속 가열은 폭발의 원인이되며 환원제, 유기물 등과 혼합하면 폭발성 혼합물이 형성 될 수 있습니다.
2	니트로 셀룰로오스	9004-70-0	0340 0341 0342 0343 2555 2556 2557	건조 시 자연 발화 가능
3	염소산 칼륨	3811-04-9	1485	강력한 산화제, 환원제, 유기물, 가연성 물질, 금속 분말 등과 혼합하여 폭발성 혼합물 형성
4	염소산 나트륨	7775-09-9	1495	강력한 산화제, 환원제, 유기물, 가연성 물질, 금속 분말 등과 혼합하여 폭발성 혼합물 형성

(2) 독성 물질 6개;

#	화학물질명	CAS번호	UN번호	주요 위험
1	염소	7782-50-5	1017	매우 유독 한 가스, 흡입하면 치명적 임
2	암모니아	7664-41-7	1005	독성 가스, 흡입 시 독성 폐기종이 발생할 수 있음; 공기와 폭발성 혼합물을 형성 할 수 있음
3	메틸 이소시아네이트	624-83-9	2480	고독성 액체, 증기 흡입으로 사망 할 수 있음; 가연성 액체, 증기 및 공기가 폭발성 혼합물을 형성 할 수 있음
4	디메틸 설페이트	77-78-1	1595	유독 한 액체, 증기 흡입 시 사망 할 수 있음; 가연성
5	시안화 나트륨	143-33-9	1689 3414	매우 독성이 강한 산의 경우 독성이 높고 가연성 시안화 수소 가스를 생성
6	시안화 칼륨	151-50-8	1680 3413	매우 독성이 강한 산의 경우 독성이 높고 가연성 시안화 수소 가스를 생성

(3) 가연성 가스 5개;

#	화학물질명	CAS번호	UN번호	주요 위험
1	액화석유가스	68476-85-7	1075	가연성 가스, 공기와 폭발성 혼합물을 형성 할 수 있음
2	액화천연가스	8006-14-2	1972	가연성 가스, 공기와 폭발성 혼합물을 형성 할 수 있음
3	산화 에틸렌	75-21-8	1040	가연성 가스, 공기와 함께 폭발성 혼합물을 형성 할 수 있으며 가열시 격렬하게 분해되며 화재 및 폭발 위험이 있음
4	염화 비닐	75-01-4	1086	가연성 가스, 공기와 폭발성 혼합물을 형성 할 수 있습니다. 화재 온도에서 위험한 중합 반응이 쉽게 발생합니다.
5	디메틸 에테르	115-10-6	1033	가연성 가스, 공기와 폭발성 혼합물을 형성 할 수 있음

(4) 가연성 액체 5개.

#	화학물질명	CAS번호	UN번호	주요 위험
1	가솔린 (메탄올 가솔린 및 에탄올 가솔린 포함)	86290-81-5	1203 3475	가연성 액체, 증기 및 공기가 폭발성 혼합물을 형성 할 수 있음
2	1,2- 프로필렌 옥사이드	75-56-9	1280	가연성 액체, 증기 및 공기가 폭발성 혼합물을 형성 할 수 있음
3	이황화 탄소	75-15-0	1131	가연성 액체, 증기 및 공기가 폭발성 혼합물을 형성 할 수 있습니다.
4	메탄올	67-56-1	1230	가연성 액체, 증기 및 공기가 폭발성 혼합물을 형성 할 수 있습니다.
5	에탄올	64-17-5	1170	가연성 액체, 증기 및 공기가 폭발성 혼합물을 형성 할 수 있음

각 물질은 번호, 물질명, 이명, CAS번호, UN번호, 분류 기준으로 제시되며, 다음 6가지 특별 규제 조치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전생애 추적을 위한 정보 플랫폼 구축
2. 통합 포장 관리 규칙 조사
3. 안전한 제조, 생산을 위한 엄격한 자격자 자격 요건
4. 운송 규제
5. 고정된 저장소 사용
6. 타 부처 또는 타 규제에 의해 규정된 의무사항

메탄올 및 에탄올의 경우, 운송 규제에만 해당되며, 질산암모늄 구매 및 판매의 관리 및 승인은 민간 우려 폭발물 규정에 따라 관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원문) 및 첨부파일(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irs-group.com/reg/news/hazchem/12937.html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주의> 본 뉴스는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출처(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

13. 호주, 2021년부터 GHS 7차 개정판 적용 예정

2020년 6월 5일, 호주는 사업장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GHS* 7차 개정판 적용일자를 1년 유예하였습니다.
*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ing of Chemicals

2019년 말, 호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GHS 7차 개정판을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하였으나, COVID-19가 호주 산업체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시행일자를 2021년 1월 1일로 연기하였습니다. 시행 이후 2년의 유예기간을 거칠 예정입니다
* model WHS Laws, work Health and Safety laws

한편, UN GHS 7차 개정판의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카테고리 1의 가연성 가스 범주에 대한 기준 변경
가연성 가스는 카테고리 1A, 1B, 2으로 분류되었음
발화성이 있거나 혹은 화학적으로 불안정한 가연성 가스는 항상 카테고리 1A로 분류됨

○ (신규)소형 컨테이너용 접이식 라벨 추가
컨테이너가 소형이며 화학물질에 대한 위험정보가 많거나 여러 언어로 경고문구를 표시해야 하는 경우 접이식 라벨을 사용할 수 있음 접이식 라벨의 형태 및 페이지 별로 명시해야 하는 정보 규정

○ 일부 건강 위해성(Health Hazards) 정의 개정
피부 부식, 생식 독성, 발암성 등에 대한 건강 위해성 용어에 대한 정의가 일부 개정되었음

○ 일부 폭발물에 대한 사전예방조치문구 'P503' 추가

P코드	폐기 시 사전예방조치문구	위험 등급	위험 카테고리	사용조건
P503	폐기/회수/재활용에 대한 정보 … 를 위해 제조사/공급자가 제공한 정보를 참조하시오.	폭발성 (Chapter 2.1)	불안정한 폭발성 물질 1.1 에서 1.5까지의 등급	…. 해당되는 경우 지역 / 지역 / 국가 / 국제 규정에 따라 적절한 정보 출처를 지정할 수 있는 제조업체 / 공급 업체 또는 관할 기관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원문) 및 첨부파일(UN GHS 7차 개정판 관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safeworkaustralia.gov.au/media-centre/news/update-transition-ghs-revision-7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주의> 본 뉴스는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출처(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

14. 대만, 기존화학물질 표준 등록을 위한 지침서 발간

2020년 6월 9일, 대만은 기존화학물질 표준 등록을 위한 지침서*를 배포하였습니다.
* Guidance on Existing Chemical Substances Standard Registration

해당 지침은 아래와 같은 목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제1장 개요 및 용어 소개
○ 제2장 등록절차
○ 제3장 면제 요건
○ 제4장 및 제5장 자료 요건 및 자료원
○ 제6장 등록자료 검토, 관리 및 정보공개

대만은 2019년 신규 및 기존화학물질 등록법*을 개정하면서 부록 6에 106개의 우선순위 기존화학물질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시된 물질을 연간 1톤 이상 수입하는 기업은 톤수 별 사전신고에 따라 부여받은 기한 내 표준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Regulation of New and Existing Chemical Substances Registration

등록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천연물질
2) 시범운전 등의 목적으로 장치류와 함께 수입되는 화학물질
3) 반응기의 화학반응이나 생산 공정에서 분리되지 않는 중간체
4) 국가방위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화학물질
5) 상업적 유통 목적이 아닌 부산물이나 불순물
6) 세관 감독하의 화학물질
7) 제조과정에서 배출되거나 생성되는 폐 화학물질
8) 혼합물 (그러나 혼합물의 개별화학물질의 경우 해당없음)
9) 완제품
10) 2% 규칙이 적용되는 기존화학물질 목록에 나열된 폴리머
11) 농약관리법, 사료관리법 등 기타 법률에서 규제되는 화학물질

표준 등록 시 필요한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등록자 및 물질의 기본 식별 정보
2. 물질 제조, 사용 및 노출에 관한 정보
3. 위험 분류 및 표시
4. 안전한 사용 정보
5. 물리화학적 특성에 대한 정보
6. 인체 유해성 정보
7. 환경 유해성 정보
8. 위해성 평가에 관한 정보
9. 노출평가 정보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원문)과 아래 웹사이트(원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tcscachemreg.epa.gov.tw/Epareg/content/login/NewsDetail.aspx?enc=393D109E147BDE1815341C467BE05551F2F414F40F92327C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주의> 본 뉴스는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출처(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

15. 중국, 식품접촉소재용 물질 신규 허가

2020년 6월 2일, 중국 국가보건위원회(NHC*)는 식품접촉소재로 사용가능한 7종의 신규 첨가제(additive) 물질 및 10종의 신규 수지(resin)의 사용을 허가하는 식품접촉용 허가물질목록(GB 9685-2016)을 개정 공표하였습니다.

* National Health Commission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규 승인된 7종의 첨가제에 대한 허용 용도 및 기준

첨가제	허용 용도 및 기준

zinc caprylate	에틸렌비닐알코올(EVOH) 플라스틱 재질 내 사용에 한하여 최대 허용 농도 0.06%
siloxanes and silicones, dimethyl, 3-hydroxypropyl group-terminated, diesters with poly(2-oxepanone), diacetates	코팅 및 코팅 필름 재질에 한해 최대 허용 농도 0.025%(건조 중량 기준)
polymer of 2,2-dimethyl-1,3-propandiol, ethylene glycol, isophthalic acid, dimethyl terephthalate, dimer acid and trimellitic anhydride	코팅 및 코팅필름 재질에 한하여 혼합 제제 중량 기준 최대 허용농도 2.5%
nepheline syenite	플라스틱 재질 내 사용에 한하여 최대 허용농도 50%
copolymer of 1,2,4-benzenetricarboxylic anhydride, 4,4'-diphenylmethane diisocyanate and 3,3'-dimethyl-4,4'-biphenylene diisocyanate	코팅 및 코팅필름 재질에 한하여 최대 허용 농도 50%(건조 중량 기준)
siloxanes and silicones, di-me, me hydrogen, reaction products with vinyl group terminated di-me siloxanes	종이 및 보드 재질에 한하여 원자재 펄프 내 함량 기준 최대 허용농도 0.0022%
polymer of 2,2-dimethyl-1,3-propandiol, ethylene glycol, isophthalic acid, sebacic acid, terephthalic acid and trimellitic anhydride	코팅 및 필름 재질에 한하여 혼합 제재 함량 기준 최대 허용농도 1.8%

○ 신규 승인된 10종의 수지에 대한 허용 용도 및 기준

수지	허용 용도 및 기준
2-propenoic acid, 2-methyl-, methyl ester, polymer with ethenylbenzene, 2-ethylhexyl 2-propenoate and methyl 2-propenoate	식품접촉용 접착제 용도에 한함
2-propenoic acid, 2-methyl-, methyl ester, polymer with butyl 2-propenoate, ethenyl acetate and 2-ethylhexyl 2-propenoate	식품접촉용 접착제 용도에 한함
2-propenoic acid, 2-methyl-, methyl ester, polymer with ethenyl acetate and 2-ethylhexyl 2-propenoate	식품접촉용 접착제 용도에 한함
2-propenoic acid, 2-ethylhexyl ester, polymer with ethenyl acetate	식품접촉용 접착제 용도에 한함
1,3-benzenedicarboxylic acid, polymer with 1,4-benzenedicarboxylic acid, 1,4-cyclohexanedimethanoland 2-methyl-1,3-propanediol	코팅 및 필름재질에 한하여 건조 중량 기준 최대 허용농도 85%
2,4-hexadienoic acid, (2E,4E)-, polymer with 1,4-benzenediol, 2-(chloromethyl)oxirane, ethyl 2-propenoate, 4,4'-methylenebis[2,6-dimethylphenol], methyl 2-methyl-2-propenoate, 2-methyl-2-propenoic acid and 2-propenoic acid, reaction products with 2-(dimethylamino)ethanol	코팅 및 필름 용도에 한함
5-isobenzofurancarboxylic acid, 1,3-dihydro-1,3-dioxo-, polymer with 1,2-ethanediol	코팅 및 필름 재질에 한하여 건조 중량 기준 최대 허용농도 5%

formaldehyde, polymer with 4-(1,1-dimethylethyl)phenol and bisphenol A	코팅 및 필름 재질에 한하여 최대 허용농도 15%
polymer of ethylene glycol, isophthalic acid, terephthalic acid, dimethyl ester and adipic acid	코팅 및 필름 재질에 한하여 혼합 제재 기준 최대 허용농도 30%
1,3-benzenedicarboxylic acid, polymer with 1,4-butanediol, terephthalic acid, dimethyl ester and hexanedioic acid	코팅 및 필름 재질에 한하여 건조 중량 기준 최대 허용농도 80%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nhc.gov.cn/sps/s7890/202006/d8e8073a2f064faf8496fea654835784/files/a319520555144d679f91dbe9fd452de7.pdf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주의> 본 뉴스는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출처(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

KOTRA 해외시장뉴스(http://news.kotra.or.kr/)

16. 홍콩 공기청정기 시장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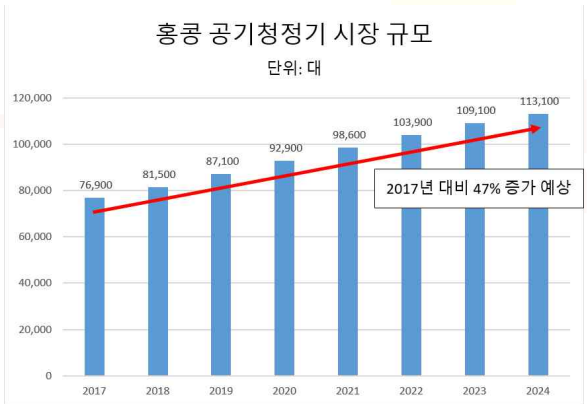
- 홍콩, 공기오염 심화로 공기청정기 수요 증가 예상 -
- 현지 소비자들 가성비 중시, 시장 특성 고려하여 진출 필요 -

□ 상품명 및 HS 코드

상품명: 공기청정기
HS 코드: 842139

□ 시장규모 및 동향

○ 홍콩 공기청정기 시장 규모



자료: 유로모니터

- 홍콩 내의 공기청정기 시장은 2017년부터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9년 홍콩 공기청정기 판매량은 전년 대비 약 6.9% 증가하여 총 87,100대로 집계되었음. 2020년의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6.7%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약 92,900대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됨
- 향후 4년간 연평균 5.4%의 증가세로 시장의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4년에는 총 판매량이 113,100대가 될 것으로 예상됨

○ 높은 건물밀도와 배기가스 배출로 인한 공기오염 문제

- 글로벌 대기오염 조사기관인 에어비주얼(AirVisual)에 의하면, 홍콩의 '대기질 지수(Air Quality Index)'는 PM2.5로 세계보건기구 (WHO, World Health Organisation) 기준보다 약 2.5배를 초과함. 또한, 공기 오염도 랭킹 중에 홍콩은 61위로 도쿄(73위), 서울(74위), 런던(82위)보다 공기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홍콩의 높은 건물밀도, 현지 차량 배기가스 배출 등의 공기 오염 문제로 인하여 실내 공기오염도 높은 수치를 기록함. 홍콩 알러지 협회(Hong Kong Allergy Association)에서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86.2% 아파트의 에어컨 필터에서 세균이 발견되었으며, 조사한 아파트의 66%는 포름알데히드* 함량을 초과함. 특히 홍콩에 약 4명 중의 1명은 비염 알러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공기 청정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됨

  * 포름알데히드 (formaldehyde): 일종의 발암성 물질

○ 코로나19로 인하여 휴대용/목걸이 공기청정기 인기 급증

- 2020년 초부터 홍콩 내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많은 시민들이 휴대용 혹은 목걸이형 공기청정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 외에 목걸이 형식으로 되어있는 휴대용 공기청정기도 사용하여 개인 위생에도 더 많은 신경을 쓰기 시작함
- 특히 마스크 착용에 거부감 있는 아동들에게 목걸이 형태의 공기청정기는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유모차/배낭 등에 장착하여 사용 할 수 있어 부모들 사이에 인기가 많음

□ **수입규모 및 동향**

2017-2019년 홍콩의 주요 공기청정기 (HS 842139) 수입국

(단위: 천 홍콩 달러, %)

순위	국명	2017년		2018년		2019년	
		수입액	증감률	수입액	증감률	수입액	증감률
1	중국	215,798	+11.9	311,445	+44.3	353,988	+13.7
2	말레이시아	37,923	-23.3	85,751	+126.1	104,156	+21.5
3	미국	90,048	+8.5	104,004	+15.5	103,083	-0.9
4	독일	9,939	-72.1	28,608	+187.8	37,228	+30.1
5	덴마크	1,012	+6.9	1,141	+12.7	36,929	**
6	**한국**	**31,888**	**+6.1**	**56,952**	**+78.6**	**33,946**	**-40.4**
7	일본	27,643	-19.7	36,958	+33.7	29,158	-21.1
8	프랑스	26,871	+64.7	13,950	-48.1	20,902	+49.8
9	영국	6,243	-9.8	13,333	+113.6	18,951	+42.1
10	대만	18,258	-6.9	23,891	+30.9	11,934	-50.0

자료: 홍콩 통계청

** 증가율 999.9% 이상임

○ 공기청정기 전체 수입액 2년간 지속 증가

- 홍콩의 공기청정기 수입은 2017년부터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9년에 총 7.8억 홍콩 달러(약 1억 미 달러)로 전년 대비 9% 증가하였음

○ 40% 이상의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산 제품

- 2019년 기준, 홍콩의 최대 수입국인 중국은 공기청정기 전체 수입액의 45%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13.7% 증가하였음. 홍콩 시장에 출시된 해외 브랜드 공기청정기는 대부분 중국산이며, 특히 최근 몇 년간 샤오미 (XiaoMi)와 같은 중국 가전제품 브랜드가 인기가 많았음. 또한, 샤오미는 2018년 홍콩 몽콕에 대형 상점을 오픈하여 홍콩 소비자들의 관심이 집중 되었음

□ **에어트리트먼트 (air treatment)* 제품 시장 경쟁 동향**

	브랜드명 (업체명)	시장점유율 (%)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1	Panasonic (Panasonic Corp)	15.2	15.2	15.3	15.2	15.3	15.3
2	Hitachi (Johnson Controls Inc)	-	13.5	13.5	13.5	13.7	13.8
3	General (Fujitsu Ltd)	11.5	11.3	11.2	11.1	11.1	11.0
4	KdK (Panasonic Corp)	9.6	9.6	9.7	9.8	9.9	10.0
5	Midea (Midea Group Co Ltd)	7.9	7.9	7.8	7.8	7.9	8.0
6	Carrier (United Technologies Corp)	6.1	6.1	6.1	6.1	5.7	5.3
7	Daikin (Daikin Industries Ltd)	2.8	3.0	3.3	3.5	3.6	3.7
8	Sharp (Hon Hai Precision Industry Co Ltd)	-	-	3.8	2.8	2.8	2.7
9	Dyson (Dyson Ltd)	0.8	1.1	1.2	2.1	2.2	2.4
10	Origo (Origin Products Ltd)	1.3	1.3	1.6	1.6	1.7	1.8

자료: 유로모니터

* 공기청정기, 에어컨, 제습기 포함

○ 홍콩 내 에어트리트먼트 제품 시장의 50%를 차지하는 일본 기업

- 2019년 기준, 홍콩 내의 TOP 4 에어트리트먼트 제품 브랜드는 모두 일본 업체 소속이며, 반 이상(50.1%)의 점유율을 차지함. 가전제품 분야에 Panasonic 등의 일본 기업들이 1960년대부터 홍콩 에이전트를 통해 시장에 진출하였고 오랫동안 좋은 품질의 제품을 선보여서 고객들의 신뢰를 쌓았음

○ 중국산 기업 시장 점유율 증가

- 중국 기업들의 가전제품 품질에 대한 편견이 있지만 Midea는 홍콩 내에 안전관련 인증(Hong Kong Safety Mark*)을 취득하여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높였음. 또한, 샤오미 제품은 2018년 홍콩 소비자위원회 (Hong Kong Consumer Council)의 가전제품 만족도 조사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높은 만족도 평가를 받아 소비자들 사이에서 유명해졌음

  * 홍콩 인증 센터(Hong Kong Certification Centre)에서 진행하는 안전관련 인증이며 홍콩 또한 글로벌 안전 테스트를 통과하는 제품만 인증 취득 가능

○ 2018년 홍콩 소비자위원회 공기청정기 조사 보고

상품명	Philips AC3259/31	Hitachi EP-NZG70J	Panasonic F-PXM55H	Xiaomi AC-M4-AA	Tefal PU4065
사진					
가격 (HKD)	4,988	4,990	3,480	1,099	2,698

생산국가	중국	일본	중국	중국	중국
총 점수 (5점 만점)	4.5	4.5	4	4	3
환기청정화	4.5	4	3.5	3.5	2.5
소음 정도	4	4.5	4	4.5	4
사용 편리성	3.5	4	4	3.5	3.5

자료: 소비자위원회, 각 회사 홈페이지

□ 유통구조

ㅇ 2018년부터 온라인으로 공기청정기 판매 지속 상승
- Broadway, Fortress 등의 전문 전자제품 판매점이 홍콩 내의 주요 유통채널이지만 2018년부터 전자상거래를 통한 판매가 지속 증가되어 2019년에는 11.1%까지 도달하였음
- 홍콩의 전자상거래가 빠르게 발전되면서 향후에 온라인 상점을 통해 판매되는 제품의 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예상됨

□ 관세율 및 인증

ㅇ 관세율: 0%

ㅇ 인증
- The Electrical Products (Safety) Regulation(전기제품 안전 조례)에 따르면, 홍콩 대상으로 공급하는 모든 가정용 전기제품은 기본 안전 규격에 부합하여야 하며 공기청정기의 경우 IEC* 60335-2-65 인증을 취득해야 함
  * 국제전기기술위원회(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IEC) 인증은 전기, 전자와 관련된 기술 및 제품 관련의 글로벌 인증임

□ 시사점

ㅇ 친환경적인 소비를 위한 부품 교체 및 애프터서비스 지원
- 단기적으로 코로나19 상황과 홍콩 공기오염 문제 등의 장기적인 문제로 인하여 공기청정기의 수요는 지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한국 기업들이 홍콩시장 진출 시 제품 인지도, 홍보 등의 마케팅 전략도 중요하지만 필터 등의 제품 부품 판매와 애프터서비스 제공 등의 이슈도 고려해야 함. 특히 대부분 공기청정기는 필터를 1-2년마다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사항을 수출하기 전에 홍콩 중개상과 협의해서 진행하는 것이 필수임

ㅇ 브랜드보다 가성비를 중시하는 홍콩 소비자
- 홍콩의 토과완 (Tokwawan)에 위치한 전자제품 판매 업체 F사 직원에 따르면, 홍콩 소비자들은 품질이 보증되는 이유로 오래전부터 일본 브랜드 선호해왔지만, 소비자위원회 조사보고 등의 평가자료를 참고하여 가성비가 높은 중국, 한국 브랜드들 위주로 구매함. 또한, 안정성과 공기 정화율* (Clean Air Delivery Rate) 등의 요소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음
  * 공기 정화율: 공기 청정기의 정화력을 표현한 수치이며, 여과된 공기의 공급량을 나타내는 지표. 공기 정화율이 높을수록 공기 정화가 잘 이뤄짐

자료: 유로모니터, 홍콩 통계청, Airvisual, Hong Kong Allergy Association, HK01, 소비자위원회, Hong Kong Certification Centre, Electrical and Mechanical Services Department, KOTRA 홍콩 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

출처 (KOTRA해외시장뉴스)

17. 쿠웨이트 반려동물 사료 시장동향

- 2016년부터 시장규모 2배 이상 증가 -
- 쿠웨이트 젊은 층 반려동물 키우기 인기 -

□ 상품명 및 선정 사유

○ 상품명: 반려동물 사료(HS Code 230910) [개나 고양이용 사료(소매용으로 한정한다)]

○ 선정 사유
- 쿠웨이트인들은 고양이, 개, 새, 물고기 등 반려동물 키우는 것을 좋아함.
- 최근 쿠웨이트 내 개, 고양이 사료 수입규모는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젊은 층들의 반려동물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반려동물 사료시장의 지속적 성장이 예상됨.

□ 쿠웨이트 반려동물 사료 시장현황

○ 증가하는 반려동물 선호 인구
- 쿠웨이트인들은 개와 고양이를 키우는 것을 선호하며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0%에 해당
- 젊은 세대들의 유럽 진출이 활발해졌고 유럽에서 많이 키우는 강아지를 선호하는 인구가 늘어남.

○ 애완동물 사료시장 전망
- 쿠웨이트는 미국, 태국, 이탈리아 및 기타 유럽 국가 등에서 반려동물 사료를 수입하고 있음.
- 쿠웨이트 내 대형슈퍼마켓 체인점인 술탄센터(Sultan Center)의 International Marketing Manager인 Mr. Makram에 따르면, " 매장에서 반려동물 사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 쿠웨이트인들이 집에서 개, 고양이를 키우는 인구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며 사료에 대한 선호는 미국 브랜드와 독일 브랜드가 일반적이고 수요가 큰 편이다"라고 응답함.
- 쿠웨이트 젊은 세대들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이 최근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반려동물 양육과 관련된 제품들의 시장소비도 또한 증가함.
- 이에 따라 쿠웨이트 상공부는 2018년 5월에 새로운 60개의 라이선스를 포함하는 법령을 발표했으며, 그중 하나는 반려동물 복지관 설립을 규정하고 있음.
- 쿠웨이트 내 반려동물 용품점, 동물병원, 반려동물 관리센터, 심지어 호텔 서비스 및 애견커피숍 등도 증가하고 있음.
- 쿠웨이트의 농업수산자원청의 동물건강부(Department of Animal Health in the Public Authority for Agriculture Affairs and Fish resources)의 Asst. Manager Mr. Waleed Al-Oud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수입한 개, 고양이의 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함.

○ Adopt a Street Princess
- 독일인 Ms. Nathalie Veys가 2015년 쿠웨이트에 오픈 한 유기동물 보호소임.
- Ms. Nathalie Veys는 "보호소를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하루 50통 이상의 구조 요청 전 화가 걸려오며 위험에 처한 개, 고양이들을 구조하여 소독, 예방접종, 훈련 등을 제공하고 국내, 해외로 입양을 보내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라고 응답했으며 쿠웨이트의 반려동물 시장은 계속하여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Adopt a Street Princess 강아지 입양 홍보



자료: Adopt a Street Princess 페이스북

□ **수입 현황**

○ 쿠웨이트 수입 규모

최근 3년간 쿠웨이트 수입 통계 HS 코드 230910 [개 &고양이 사료]
(단위: US$ 천)

국명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전체	5,894	7,376	6,842	9,701	13,077
미국	2,283	3,001	2,755	3,363	3,575
태국	1,060	965	981	1,292	2,824
이탈리아	481	621	522	1,087	1,224
스페인	275	448	441	575	1,202
프랑스	640	622	583	687	941
독일	273	355	416	548	564
헝가리	9	20	43	142	460
캐나다	28	86	206	349	436
오스트리아	16	101	154	242	371
영국	172	243	136	245	319

자료: Trade Map

- 미국, 태국, 이탈리아 및 기타 유럽 국가에서 반려동물 사료를 수입하고 있음.
- 1위는 미국, 2위는 태국, 3위는 이탈리아 순으로 수입규모 순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며, 2018년 기준 미국은 전체 반려동물 사료시장 수입의 약 27%를 차지하고 있음.
- 매년 쿠웨이트에서 반려동물의 수가 늘어나면서 매년 수입의 규모도 증가하고 있음.

□ **경쟁 동향**

○ 반려동물 사료 주요 수입국가(미국, 태국, 유럽)
- 반려동물 사료는 주로 미국, 태국,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 및 기타 유럽 국가에서 수입하고 있음.

○ 온라인 쇼핑몰/ 대형 슈퍼마켓/ Pet Zone

- 쿠웨이트에서 동물사료는, 온라인몰, 대형슈퍼마켓, 동물병원이나 용품점 등에서 다양한 채널로 판매 중임.
- Pet Zone은 쿠웨이트 최대 규모의 반려동물 관련 종합 서비스 및 제품 공급 체인매장으로 쿠웨이트의 지역마다 분포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용품 및 호텔, 미용케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나 고양이 이외에도 새, 물고기, 도마뱀, 특이한 반려동물 등도 취급하고 있음.

Petzone 매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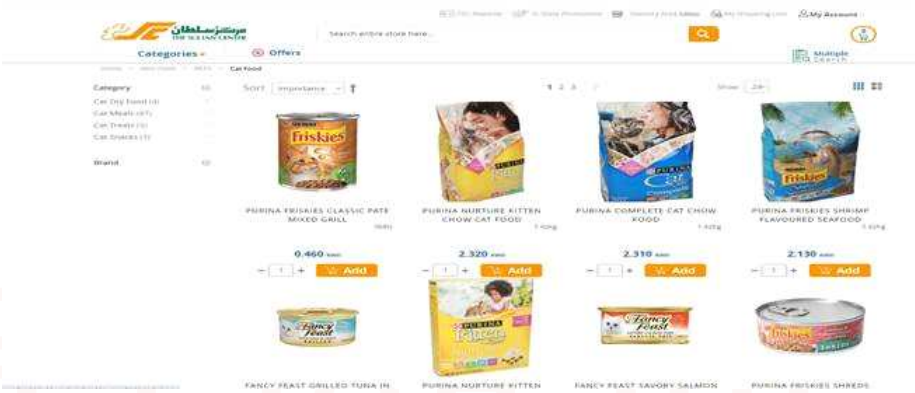


자료: Pertzon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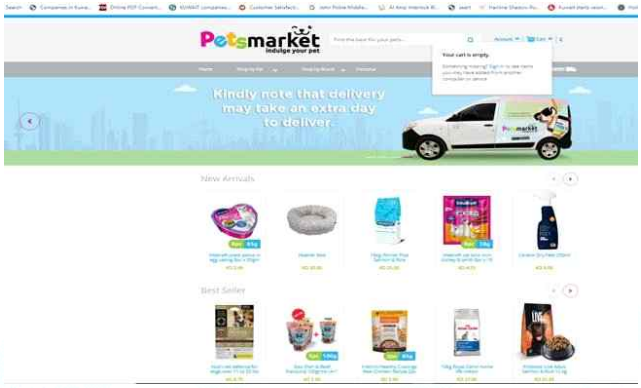
자료: Frommfamily(https://frommfamily.com/r/10054)

Sultan Center(대형 슈퍼마켓)에서 판매 중인 반려동물 사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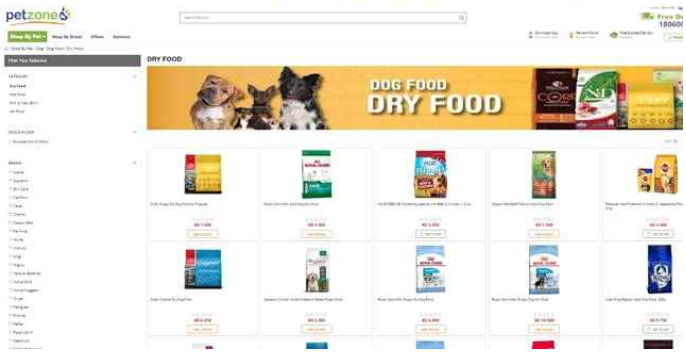
자료: SultanCenter

반려동물 용품 온라인숍



자료: Petsmarket

PetZone 온라인숍



자료: Petzone

Petzone 강아지 사료 판매 인기순 가격(Dog Dryfood 2kg 기준)

순위	브랜드	사진	원산지	가격(US$)
1	Orijen		캐나다	20
2	Royal Canin		뉴질랜드	18
3	Classic Pets Beef Flavour		베트남	5

자료: Petzone

□ 유통 채널

○ 유통순서



자료: 쿠웨이트무역관 자체편집

1. 제조(수출)업체(또는 공장)에서 유통업체나 대리점 또는 소매점으로 제품을 수출함.
2. 에이전트 또는 유통업체(Sultan Center, City Center, Carrefour, Lulu Hypermarket 등)와 같은 대형 매장에서 판매
3. 유통업체에서 소규모 전문 애완동물상점에 공급
4. 최종 사용자(소비자)

□ **관세율, 수입서류 및 인증**

○ 관세

- CIF 가치에 대한 5% 관세(다른 수입관세는 부과되지 않음).
- 쿠웨이트 관세청은 대부분의 수입품에 대해 5%의 일반 관세를 징수하는데, 여기에는 상품의 비용, 보험, 운임가치가 포함됨.

○ 수입 필요서류

- 쿠웨이트로 수입하려면 상업 송장의 인증 및 적법한 사본 3부
- 선하증권(항공운송장)
- 원산지 증명서

> * 원산지증명서 추가 정보
> - 상공회의소로부터 정식으로 인증을 받아야 함.
> - 쿠웨이트 영사관이나 출발국 대사관에 의해 인증을 받아야 함.
> - 제조공장 또는 생산자의 전체 이름과 화물 운송업자의 전체 이름을 기재해야 함.
> - 운송수단을 밝혀야 하며 원산지를 표기해야 함.

- 쿠웨이트에 상품이 도착하기 전에 수입 업체가 송장 및 문서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함.
- 서류가 없으면 통관 불가함.

□ **시사점**

○ 쿠웨이트 젊은 세대들이 반려동물 기르는 것을 선호함에 따라 최근 5년간 반려동물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반려동물시장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쿠웨이트 시장에서 반려동물 사료는 치열한 경쟁이 있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 현재 미국 브랜드의 시장점유가 높은 편임.

○ 쿠웨이트에 진입하려면 시장에서 활동적이고 명성 있는 바이어를 선정해야 하는 것이 중요함.

○ 쿠웨이트인들은 개나 고양이 이외에도 새, 물고기 등 다양한 반려동물을 기르는 점을 참고하여 사료뿐 아니라, 반려동물 관련 기발하고 참신한 아이템을 보유한 한국기업들이 쿠웨이트 시장에 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함.

자료: Ppfeurope, Petzone, SultanCenter, Petsmarket, Trade Map, Frommfamily, AdoptaStreetPrincess, 바이어 인터뷰, 쿠웨이트 무역관 자체 자료

출처 (KOTRA해외시장뉴스)

18. 태국 광케이블 시장 동향

태국 광케이블 시장 동향(HS 8544.70)
- 전선 지중화 프로젝트, 브로드밴드 설치 프로젝트 등 진행 -
- 코로나 19 영향 불가피 -

□ **상품명 및 HS코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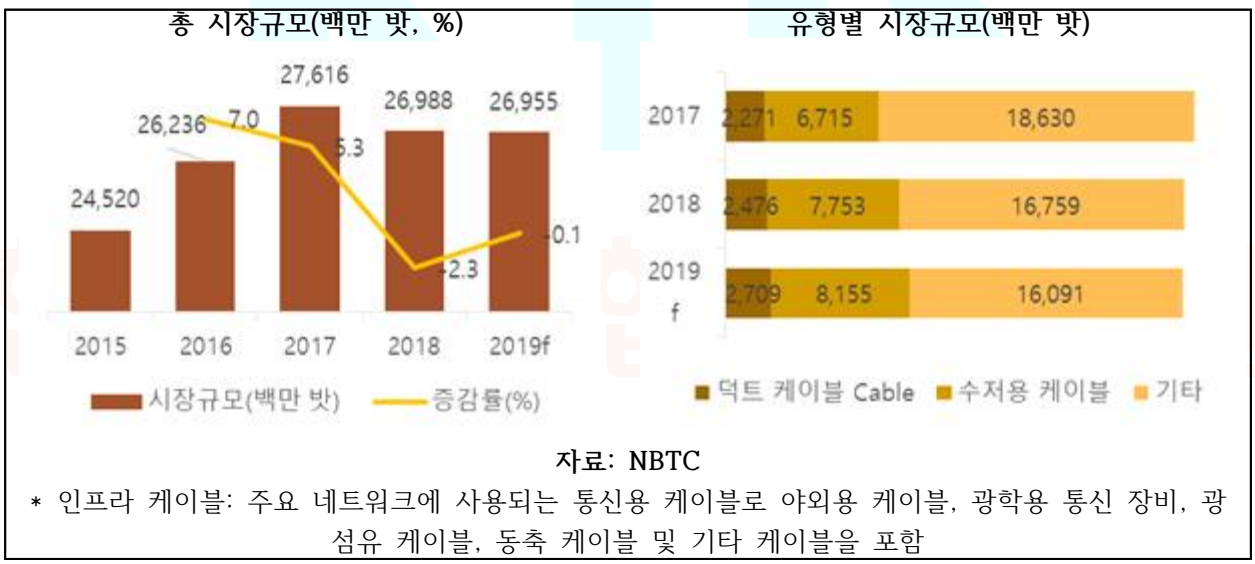
○ 상품명: 광섬유 케이블 또는 광케이블(Insulated Optical Fiber Cables)

○ HS 코드: 8544.70
- HS 8544.70.10: 해저의 전화기 케이블, 해저의 전신 케이블, 해저의 라디오, 무선 중계 케이블
- HS 8544.70.90: 기타

□ **시장동향**

○ 태국 공공 및 민간 분야 모두 디지털화가 급속도로 추진되면서 인프라용 케이블 제품 수요는 꾸준한 편이지만 시장규모는 2017년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다소 감소세를 나타냄.
- 태국 국가방송통신위원회(NBTC)에 의하면, 2019년 태국 내 인프라용 케이블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0.1% 감소한 269억 5500만 밧(8억 4978만 달러)으로 추산
- 유형별로는 덕트 케이블 시장규모가 27억 900만 달러(8540만 달러)로 전체 케이블 시장의 10.1%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저용 케이블은 81억 5500만 달러(2악 5709만 달러)로 30.3%를 차지

인프라용 케이블 시장규모(2015-2019)



자료: NBTC

* 인프라 케이블: 주요 네트워크에 사용되는 통신용 케이블로 야외용 케이블, 광학용 통신 장비, 광섬유 케이블, 동축 케이블 및 기타 케이블을 포함

○ NBTC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전국적으로 102만 킬로미터의 자기 지지형 가공용 광케이블

설치가 이루어지면서 광케이블이 전체 신규 케이블 네트워크의 98.9%를 차지
- 2019년 한 해 동안에만 7만 6500km의 자기 지지형 가공용 광케이블 설치가 이루어진 가운데 지역별로 태국 북동부 지역에 2만 4854km, 북부 지역에 1만 4012km, 방콕 및 수도권 지역에 1만 580km이 설치되었음.

신규 통신 케이블 설치 현황(2015~2019년)
(단위: km)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18/2019
자기 지지형 가공용 광케이블	112,247	163,433	143,638	124,174	76,490	-38.4%
동 케이블	1,833	3,390	953	1,258	105	-24.24%
기타	563	-	-	-	-	-

자료: NBTC

□ **관련 프로젝트**

○ 태국 국영통신사인 TOT는 2017년부터 100억 밧(3억 1526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여 전국적으로 ADSL 동선(Copper wire)을 광케이블로 교체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음.
- 이는 광케이블 설치 시 정보 손실도가 적고 빠른 전송 및 출력이 가능하다는 장점과 함께 2021년으로 예정된 일반 전화 번호체계를 현 9자리에서 10자리로 늘릴 계획 실행을 위한 준비를 위함임.

○ 마을단위 인터넷 브로드밴드 보급 프로젝트 '넷 프라차랏' 진행
- 태국 디지털경제사회부는 2017년부터 NBTC와 협력하여 국가 의제인 '타일랜드 4.0' 를실행하기 위해 전국 2만 4700개의 지방 마을에 브로드밴드 설치 작업을 수행중임.
- 이와 관련하여 TOT사가 코어기반 광케이블(12 core-based optical fiber cable)네트워크 설치를 담당하고 있으며, 2017년 130억 밧(4억 984만 달러)의 예산이 집행되었음.
- 태국 디지털경제사회부는 2020년 7월 초, 넷 프라차랏 프로젝트 진행 이후 890만 대의 브로드밴드가 설치되었다고 발표

○ 전선 지중화 작업(지하 케이블 도관 프로젝트)
- NBTC는 도시 미관 개선 및 네트워크 연계성 강화를 위하여 2016년부터 방콕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봇대에 매달려 있는 통신 케이블을 지하로 매립하는 '지중화' 작업을 추진 중에 있음.
- 이 프로젝트는 수도권 전력청(MEA; Metropolitan Electricity Authority), 지방전력청(PEA; Provincial Electricity Authority, 방콕시, 왕립태국 경찰, 태국 이동통신협회,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함께 추진
- NBTC 의 발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106개 루트에 275km의 지중화 작업이 이루어 졌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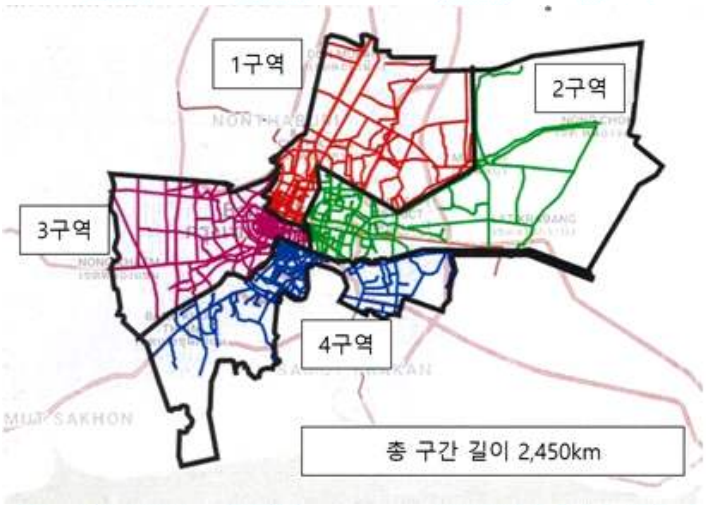
지중화 프로젝트 개요

프로젝트 명	**The underground cable conduit project**
시행 지역	방콕, 사뭇프라깐, 논타부리
책임 수행사	Krungthep Thanakom Co., Ltd. (방콕시 승인)
완공 시기	2021년 5월 * 초기에 수립한 시기로 실제 완공은 어려운 상태
총 길이	동선기준 2,450 km (도로 길이 기준 1,295km)
사용계약	방송 및 통신 사업자의 30년 임차 계약
추진 경과 (2020년 6월 기준)	- NBTC, 통신 케이블 임차료율 관련 조사 및 연구 중 - NBTC는 통신 사업자들이 계약에 앞서 3개월간 시범 사용이 가능하도록 허용
시범구간 공사	100% 완료(7.252 km) * 방콕 내 Wireless Rd., Ratchapisek Rd., Narathiwat Ratchanakarin Rd

건설 계약 정보	- 2019년 4월 발표에 따르면 구간별 낙찰기업 정보는 아래와 같음. 1구역: SCL, STC, FOSS 컨소시엄 2구역: AWD 컨소시엄 3구역: GKE, FEC 컨소시엄 4구역: SCL, STC, FOSS 컨소시엄

자료: Thanakom 홈페이지

지중화 프로젝트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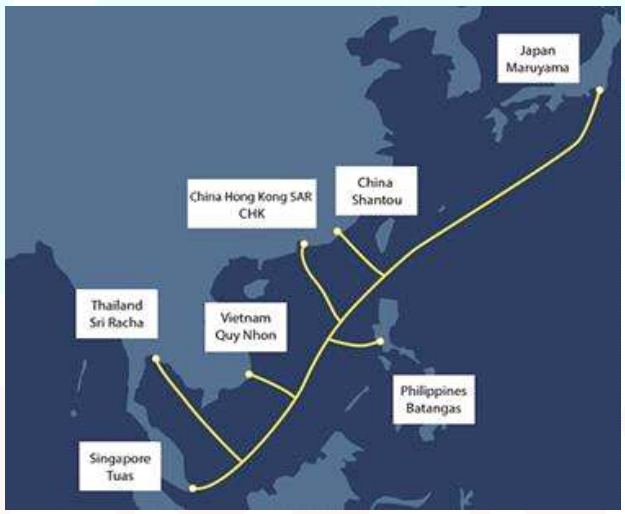


자료: Thanakom 홈페이지

○ **해저 케이블 설치 프로젝트**

- 2020년 6월 중국, 일본,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통신사업자들로 구성된 컨소시엄인 ADC(Asia Direct Cable) 참여기업들은 일본에서 싱가포르를 잇는 9400km 구간의 해저 케이블 설치에 합의함.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될 이 프로젝트는 일본의 NEC사 주도하에 추진될 예정이며, 태국에서는 국영 통신사인 CAT이 참여. 다중 광케이블이 설치될 예정임.

해저 케이블 설치 프로젝트 지도



자료: Thansetakij

□ **수입동향**

○ 태국의 광섬유 케이블(HS 8544.70) 수입은 지난 3년 연속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2019년 수입액은 전년 대비 16.4% 감소한 1억 7813만 달러를 기록

- 태국의 최대 광섬유 케이블 수입국은 중국으로 2019년 수입액이 1261만 달러에 달하여 전체 수입액의 63.2%를 차지
- 2위인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은 지난 3년간 수입 비중이 꾸준한 증가세로 2019년 수입비중은 15.6%, 수입액은 2780만 달러를 기록
- 2019년 기준 태국의 한국산 광섬유 케이블 수입은 전년 대비 28.8% 감소한 65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13위에 오름.

태국 광섬유 케이블(HS 8544.70) 수입동향(2017~2019년)

(단위: 천 달러)

순위	국가명	수입액			비중			증감률
		2017	2018	2019	2017	2018	2019	2019/2018
세계		228,527	213,019	178,127	100.0	100.0	100.0	-16.4
1	중국	183,122	160,685	112,611	80.1	75.4	63.2	-29.9
2	일본	18,075	29,705	27,798	7.9	14.0	15.6	- 6.4
3	미국	8,630	6,485	13,846	3.8	3.0	7.8	113.5
4	핀란드	1	33	7,128	0.0	0.0	4.0	21,480.8
5	스리랑카	2,071	2,151	3,226	0.9	1.0	1.8	50.0
6	덴마크	1,636	1,600	1,950	0.7	0.8	1.1	21.9
7	멕시코	2,068	2,146	1,889	0.9	1.0	1.1	- 12.0
8	베트남	4,113	3,531	1,375	1.8	1.7	0.8	- 61.1
9	호주	377	-	1,257	0.2	0.0	0.7	0.0
10	인도네시아	3	591	1,257	0.0	0.3	0.7	112.7
13	한국	**2,608**	**914**	**651**	**1.1**	**0.4**	**0.4**	**- 28.8**

자료: Global Trade Atlas

□ **경쟁동향**

○ 태국 상무부 산하 사업개발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태국 내 '광섬유 케이블 제조'로 사업자등록을 한 기업수는 17개 이며, 17개사의 등록자본금 액수는 19억 밧(5990만 달러) 수준임.

- 일반 케이블 제조 또는 다른 사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수행한 기업 중 광섬유 케이블 제조도 병행하는 기업이 있으므로 실제 제조 기업은 17개사 이상일 것으로 추정됨.

○ 태국 내 주요 광섬유 케이블 제조기업 정보는 아래와 같음.

태국 내 주요 광섬유 케이블 제조기업 소개

기업명	설립연도	사업영역	기업정보
Fabrinet Co.,Ltd	1999	광케이블, 전자제품, 의료기기 제조, 수입, 수출	- 홈페이지: https://fabrinet.com/
Thai Fiber Optics Co., Ltd.	1996	단일 모드 및 다중모드 광섬유 케이블, 플라스틱 파이프, 전화선 등 제조, 수입, 수출	- 홈페이지: http://www.tfoc-btc.com/ - 태국 Loxley Public Co., Ltd. 사와 일본 Furukawa Electric Co., Ltd. 사 간 JV 제품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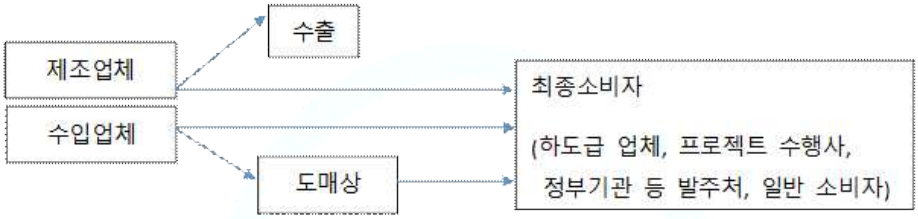
			
Futong Group Communication Technology (Thailand) Co., Ltd	2010	각종 케이블(Figure-8, ADSS, 광섬유, LAN, ADSS 케이블, 동축) 제조, 수출, 판매	- 본사소재지: 중국 제품 이미지 
HBC Telecom Co., Ltd.	1982	통신케이블, 전자선, 안테나, ADSS, 광섬유 케이블 등 제조	- 홈페이지: http://www.hbct.co.th/ - 태국 Bangkok Cable Co., Ltd.사와 일본 Hitachi Cable Limited 사 간 JV 제품 이미지 

자료: 사업개발국(DBD), Fabrinet Co.,Ltd, Thai Fiber Optics Co., Ltd. HBC Telecom Co., Ltd.사 홈페이지 및 Futong Group Communication Technology (Thailand) Co., Ltd 페이스북 계정

□ **유통구조**

○ 광섬유 케이블 제조기업은 대개 중간 유통과정을 거치지 않고 하도급 업체, 프로젝트 수행사, 정부기관 등 발주처, 일반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수입업체의 경우 최종 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도매상 등 중간 유통상을 거치는 경우도 있음.

광섬유 케이블 유통구조



자료: 현지바이어 인터뷰 내용을 종합하여 방콕무역관 작성

□ **관세율 및 인증**

○ 광섬유 케이블(HS 8544.70)은 무관세 품목으로 부가가치세(VAT) 7%만 부담하면 됨.
- 그러나 광섬유 케이블 수입을 위해서는 태국산업표준원(TISI)의 제품 인증이 필요

광섬유 케이블 관세율 및 인증요건

품목병	광섬유 케이블
HS Code	8544.70
수입 관세	면제
부가가치세	CIF의 7%
수입 요건	태국 산업표준원(TISI)의 제품 인증 필요

자료: 태국 관세청 통합세율 조회 시스템

○ 태국산업표준원(TISI)의 강제 인증이 필요한 광섬유 케이블 제품은 아래와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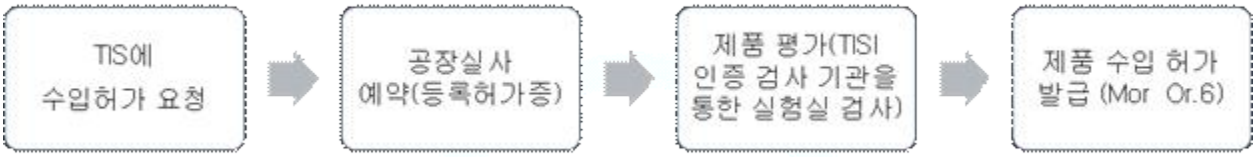
태국산업표준원(TISI) 강제 인증 해당 품목

TIS 번호	발효일	인증구분	적용	제품 설명
TIS 2165-2548 (2005)	2007.01.26	강제인증	실외 케이블	관로용 및 직매용 통신 광케이블 (Optical fiber cables - Part 3-10: outdoor cables - family specification for duct and directly buried optical telecommunication cables)
TIS 2166-2548 (2005)	2007.06.22	강제인증	실외 케이블	자기 지지형 가공용 광케이블 (Optical fiber cables - Part 3-20: outdoor cables - family specification for optical self-supporting aerial telecommunication cables)

자료:태국산업표준원(TISI)

○ 통상 태국산업표준원(TISI) 인증을 위해서는 심사관들의 제조 시설 실사 과정을 거치게 되지만, 현재 코로나19 발생으로 출장이 어려운 상황이 되자 TISI 는 2020년 5월 1일부터 임시로 샘플 수입 후 샘플 테스트를 태국 내에서 진행하고 매 수입 시마다 1회성 수입 인증을 부여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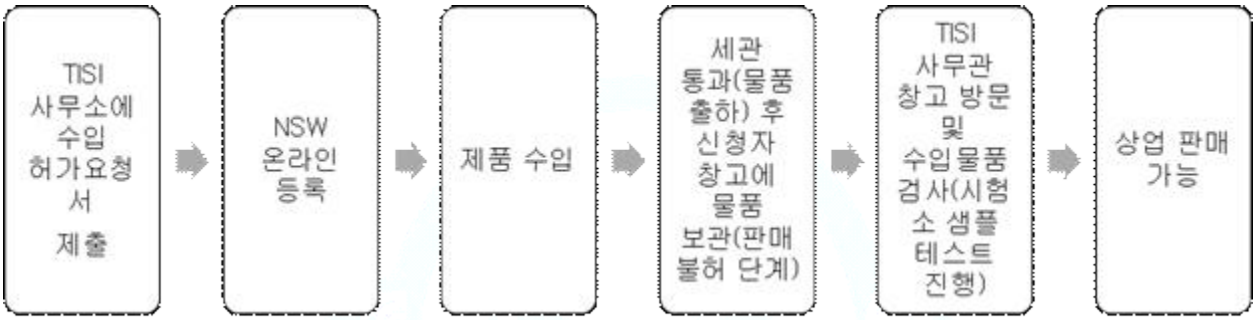
통상적인 TISI 강제인증 절차 및 관련 서류



구분	수입 허가	해외 제조업체 등록	제품 인증
기관	TISI 사무소	TISI 기관	TISI 인증 검사 기관
필요서류	1. 신청서(Mor Or. 5) 2. 공장설립 허가증 3. 공식 대리인 신분증 사본 4. 공장연락처 5. 위임장, 위임자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6. (법인) 법인 등록증 7. (개인) 상업등록증, 신청자의 가옥 대장 사본 8. 실험 증명서 Lab test result 9. 품질관리증명서, ISO 9001 (중 1개) 10. 적합성 인증(Certificate of Conformity) (제출시 8, 9번 제출 불요) 11. 제품 사양 12. 상표권 사본(요청 시)	1. 신청서 2. ISO 9001 (해당 시) 3. 제품 사진/카탈로그 4. 업무절차도 5. 제조기기(계), 기구, 장비, 도구 리스트6. 품질관리계획 7. 제품 테스트를 위한 실험 도구 리스트	1. 제품사양, 제품 자료표 2. (제조 관리) 제조자 작성 품질관리평가서(3년 이내 발급본) 또는 공인검사소 발급 제품품질보장확인서(1년 이내 발급) 3. 최소 길이 1,000m 이상의 제품 샘플 및 장치 cable line and its devices
소요기간	10 영업일	약 26영업일	제품에 따라 상이
수수료	3,000밧	- 공장 실사: 최대 15,000밧/일 - 기타 비용: 최대 20,000밧(아시아권)	제품에 따라 상이
유효기간	영구적	3년	제품 및 심사관에 따라 차등
갱신	-	만료일 최소 60일 전 신청 신규시와 동일한 서류 및 수수료 발생	신규시와 동일
비고	-	2020년 7월 기준 TIS No.2165-2548 인증획득 외국기업수는 15개, TIS No.2166-2548 인증획득 외국기업수는 16개로 조회되며, 대부분은 중국산에 해당	- 제품 인증을 위해서는 샘플수입 요청서(Mor.20) 제출이 선행되어야 함. - 샘플 수입은 최대 4,000m까지 가능

자료: TISI

임시 TISI 강제인증 절차 및 관련 서류



구분	TISI 임시 수입허가
담당기관	TISI
구비서류	1. 신청서(Mor Or. 5) 2. 공장설립 허가증 3. 공식 대리인 신분증 사본 4. 공장연락처 5. 위임장, 위임자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6. (법인) 법인 등록증 7. (개인) 상업등록증, 신청자의 가옥 대장 사본 8. 실험 증명서 9. 품질관리증명서, ISO 9001 (중 1개) 10. 적합성 인증(Certificate of Conformity) (제출시 8, 9번 제출 불요) 11. 제품 사양 12. 상표권 사본(요청 시) 13. 수입서류 -상업용 송장, 선하증권, 포장명세서
소요기간	약 2개월(TISI 사무관과 유선 통화로 확인)
수수료	1. 수입허가 발급: 3,000밧(1회) 2. 제품 시험: 제품에 따라 상이

자료: TISI

□ 시사점

○ 현재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전반적인 소비가 감소하고 많은 프로젝트들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거나 지연되고 있는 상황임.
- 그러나 태국 정부는 2020년 2월 5G 주파수 입찰을 실시했으며, 최근 해저 케이블 프로젝트가 발표된 만큼 태국 내 관련 프로젝트 상황을 주시하며, 광케이블 납품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필요는 있음.

○ 방콕무역관과 광케이블 바이어 B사의 구매담당자 P씨와의 전화 인터뷰에 의하면, 수입제품은 내구성 등 품질이 우수한 반면, 로컬 제품 구매 대비 2개월 가량의 시간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전함. 이에 더하여, 로컬 기업들은 저가의 수입제품들과 경쟁하기 위해 판매 가격을 낮추고 있어 바이어들 사이에서는 대체로 로컬 제품 구매가 선호되는 편이라고 언급
- 태국 바이어들에게 가격은 언제나 중요한 구매 요소에 해당하는 만큼, 적정 가격 설정이 필요

○ 일부 광케이블의 경우 태국산업표준원(TISI)의 인증 절차가 필수이므로, 인증필요 서류와절차를 숙지하고 장기거래가 가능한 유능한 바이어를 통하여 인증 및 수입을 진행을 권장함.

작성자: KOTRA 방콕무역관 Chanatta Thararos
자료: 국가방송통신위원회(NBTC), 사업개발국(DBD), 방콕시 행정부(BMA), 태국산업표준원(TISI), Global Trade Atlas, 태국 관세청, 태국 현지언론(Thansettakij, Bangkok Post, Bagngkokbiznews)

출처 (KOTRA해외시장뉴스)

19. 코로나19 팬데믹 속 인도 인공호흡기 시장 동향

- 만성 질환 발생률 상승 및 고령화 인구 증가로 인도 시장 확대 -
- 수입제품 의존도가 75%를 넘어서며, 수입제품 의존도 심화 -
- 제조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현지 제조 고려 -

□ **상품명 및 HS Code**

ㅇ 상품명 : 벤틸레이터(인공호흡기)

ㅇ HS Code : 901920
- 해당 HS 코드는 인공호흡기 또는 다른 치료 호흡 장치 및 부품 및 액세서리를 포함

□ **관련 시장 개요**

ㅇ 의료산업은 인도 주요 성장 산업 중 하나
- 인도 의료산업 규모는 2018년 기준 967억 달러로, 고용과 교역 측면에서 국가 최대 산업 부문 중 하나로, Frost &Sullivan은 2022년까지 3,720억 달러 규모로 성장 전망
- 이 중 의료기기 산업 규모는 2019년 기준 110억 달러이며, 전체 의료산업의 약 11%를 차지
- 인도는 세계 20위의 의료 기기 시장으로, 아시아에서도 일본, 중국 및 한국에 이어 4위 규모의 대규모 시장임.

ㅇ 외국인 투자 증가
- 인베스트인디아에 따르면, 인도에는 약 800개의 의료기기 제조업체가 있으며, 평균 250만 달러의 투자유치와 함께 연간 약 650만 달러의 매출 기록.
- 2015년 정부가 의료기기 외국인 투자를 100% 허용하였고, 2000년 4월 - 2020년 3월까지 의료기기 분야의 외국인투자(FDI)는 총 21억 3,000만 달러로 전체 투자부문 중 33위 기록. 전체 투자금액의 0.45%로 적은 수치이나, 최근 5년 기준 6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며, 최근 주목받는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음.

□ **인공호흡기 시장 동향**

ㅇ 시장 규모
- 2019년 인도 내 인공호흡기 판매량은 8,510대로 4,447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 중 수입규모는 3,358억 달러로 수입제품이 전체의 75% 차지.
-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인도 시장 내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Skanray Technologies AgVa Healthcare, AB Industries 등의 현지 주요 인공호흡기 제조업체는 봉쇄 전(2월) 2,520대의 생산량을 봉쇄 이후(3월) 5,580대로 증가시키는 등 생산량을 두 배 이상 확대
- 글로벌 기업인 Medtronics의 경우, 코로나19영향으로 6월 말부터 벤틸레이터 생산량을 현재 200대/1주(周) 에서 5배 가량인 1,000대/1주(周)로 확대 생산 중

ㅇ 시장 전망

- 시장조사업체(ReportsnReports)에 따르면, 인도 의료기기 산업은 연평균 15% 성장을 기대하는 잠재력있는 시장이며, 2025년까지 50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인공호흡기의 경우, 2018년 8억 6,000만 달러 시장에서 5년간 8.0%씩 성장해 2023년까지 12억 6,000만 달러의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
- 고령화 사회로 만성 및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노인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며, 신생아 폐렴의 유병률이 증가함에 따라 인공호흡기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

□ **수입동향 및 對韓수입 규모**

○ 2019년(1~12월) HS Code-901920의 총 수입액은 약 1억 3,970만 달러

○ 주요 수입원은 미국, 중국, 네덜란드로, 전체 수입에서 52%이상 점유율 차지

○ 2019년 인공호흡기 수입은 전년 대비 4.15% 증가했으며, 매년 수입이 증가하는 추세. 한국 제품 수입액은 약 130만 달러 규모로, 약 1% 점유율 차지

2019년 HS Code-901920 국가별 수입액
(단위 : 천 달러, %)

순위	국가	수입액			점유율			18/19 변동률
		2017	2018	2019	2017	2018	2019	
1	미국	31,672	35,256	32,057	28.71	26.28	22.95	-9.07
2	중국	21,768	21,816	27,294	19.73	16.26	19.54	25.11
3	네덜란드	897	9,816	14,257	0.81	7.32	10.21	45.25
4	독일	9,344	20,632	13,197	8.47	15.38	9.45	-36.04
5	호주	5,630	6,926	7,297	5.10	5.16	5.22	5.35
6	뉴질랜드	4,707	5,428	6,208	4.27	4.05	4.44	14.38
7	아르헨티나	3,748	4,629	4,922	3.40	3.45	3.57	7.85
8	싱가포르	4,722	3,540	4,655	4.28	2.64	3.33	31.8
9	영국	4,025	4,894	4,563	3.65	3.65	3.27	-6.76
10	스웨덴	4,581	4,534	3,987	4.15	3.38	2.85	-12.06
11	한국	864	871	1,301	0.78	0.65	0.93	49.45

자료: Global trade atlas

□ **경쟁동향**

○ 인도에서 호흡기를 생산하는 주요 기업들은 외국기업과 인도 기업의 합작회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인도의 대표적 제조기업으로는 MEDISYS, Skanray, AgVa Healthcare 등이 있으며, 글로벌 기업으로는 Philips, GE Healthcare 등이 있음.

인도 시장 내 주요 기업 및 주요 제품

기업명	국가	제품	세부내역
MEDISYS	인도	 Medical Ventilator	**기업명** :MEDISYS **설립 연도** : 1978 **본사** :푸네 **주요 제품** :의료용 인공 호흡기, 소아용 인공 호흡기, 휴대용 인공 호흡기

Skanray	인도		**기업명** :Skanray **설립 연도** :2007 **본사** :카나타카 **주요 제품** :폐 손상 발생률을 줄이는 인공 호흡기, 소아용, 성인용 ICU 인공 호흡기
AgVa Healthcare	인도		**기업명** :AgVa Healthcare **설립 연도** :2007 **본사** :뉴델리 **주요 제품** :소형 인공 호흡기
Philips	네덜란드		**기업명** :Philips **설립 연도** :1891 **본사** :암스테르담(네덜란드) **주요 제품** :의료용, 가정용, 소형 인공 호흡기
GE Healthcare	미국		**기업명** :GE Healthcare **설립 연도** :1994 **본사** :시카고(미국) **주요 제품** :KAESCAPE R860

자료: 각 사 홈페이지 종합

o 현지 제조 현황

- (하리아나州) 대형, 개인병원 등 인공호흡기 산업의 최종소비자가 가장 많이 포진하고 있어 州 내에서 제조 및 공급 진행
- (텔랑가나州) 의료기기 제조 허브가 구축되어있으며, st jude medical, Medtronic 등 글로벌 의료기기 업체 다수 유입
- (타밀나두州) 의료기기 제조 허브가 구축되어 있어, 많은 글로벌 기업들(Roche 등)과 현지기업(trivitron healthcare 등)들이 제조시설 설립

인도 인공호흡기 시장 클러스터



자료: make in india

○ 현지 제조품의 품질 문제 상존하는 가운데, 인도 정부와 기업은 다양한 시도
- 6월 19일 뭄바이 JJ 병원과 St George병원은 A사에서 제조한 81개의 인공호흡기에 대해 제품불량 문제를 지적하며 반품
- 해당 제조사의 인공호흡기가 환자들에게 100%의 산소를 공급할 수 없으며, 산소공급 수준이 일정하지 않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제시했으며, 이 중 한 개의 제품은 테스트 시작 5분 만에 오작동을 일으키는 상황 발생
- St George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여러 번의 테스트를 진행했음에도 인공호흡기는 단 한번도 100% 산소공급을 하지 못했으며, 환자에게 원하는 수준의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면 인공호흡기 역할을 할 수 없는 제품이라고 대답
- 인도 의료기기 스타트업인 Nocca Robotics사는 코로나19 확진자 치료용 인공호흡기를 개발하였는데, 공동설립자인 Nikhil Kurele씨는 '기존 병원에서 사용하는 인공호흡기는 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해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인공호흡기용 자외선 필터를 개발 및 추가하였다'며, 7월까지 1만 여대의 제품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
- 최근 폐 질환 환자가 증가하여 제품 공급이 부족해 지자, 인도 정부는 자동차 업체들에 인공호흡기 생산 요청
- 현지 인공호흡기 제조 업체들은 추가 생산을 위해 4월에 TATA Motors와 같은 타 분야 기업과 파트너쉽을 형성하는 등 제품 생산 노력
- 일례로, Air liquide medical systems는 현대자동차와 제휴해 2020년 4월에 첸나이 현대공장에서 1,000대의 산소호흡기를 생산했으며 타밀나두, 안드라프라데시州 등 확진자 다수 발생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공급한 바 있음

□ **인증, 유통 및 관세**

○ 인증
- 하기 위험등급 중 C, D 등급 의료기기는 중앙인증기관인 CDSCO(Central Drugs Standard Control Organization, 중앙의약품표준통제국)의 안정성 검사를 거쳐야 함.
- CDSCO로 온라인 신청을 하게 되며 통상 인증 신청부터 취득까지 약 9개월 이내의 시간이 소요
- 이때 해외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경우 별도의 인증이 필요없이 수입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제품별로 상이하므로 사전 확인이 필수

위험등급별 의료품목 예시

위험등급	의료품 리스트
A등급	상처 드레싱용, 흡수용패드, 솜, 상처 스트립, 접착밴드, 거즈 드레싱, 정전기 방지 튜브, 압력 표시기, 압력제한장치, 주입용 주사기, 의양품 투여를 위한 펌프, 주사기, 소변채취 병, 상처 제거 장치, 수정 안경 및 프레임, 청진기, 치아재료, 검사용 장갑 등
B등급	필름 드레싱, 무약 함침 거즈, 혈액 저장용 냉장고, 치과 교정 물질, 치과 보철물, 바늘, 빨대, 두피, 수술용 면봉, 수술용 장갑, 전동 피부 보호기 등
C등급	상처 및 심한 화상을 위한 복장, 혈액 봉지, 혈전 렌즈, 정자 분리기, 요도 내경관, 무선 수정렌즈, 전기 경련 치료기 등
D등급	신경 내시경, 뇌 주걱, 척추, 카테터, 원위부 보호장치, 흡수성 봉합물, 피질 전극, 척추 스텐트, 코클리어 신경결핍(CND) 전극, 중앙신경 바이러스 검사 시스템 및 심장 결함기기 등

자료: CDSCO, KOTRA 뉴델리 무역관 재편집

○ 수입 허가

- 인공호흡기를 포함한 모든 수입 의료기기는 CDSCO가 운영하는 의료기기 온라인 접수처(SUGAM)에 수입허가 신청을 하며, CDSCO는 수입 허가된 자에 한해 등록 번호를 부여하고, 해당 번호는 수입업자가 의료기기 라벨 부착시 기재함.
- 해외 제조업체 및 공급업체는 의료기기 수출 시 수입 신청 절차를 대행해 줄 업체(기관)가 필요하며, 대행업체의 경우 현지 시장에서 의료기기를 판매할 수 있는 취급허가증을 소지해야 하며, 신청서를 작성해 인도 보건가족복지부(MoHFW) 웹사이트에 제출해 수입허가 신청을 받음.
- 해당 절차는 위험 등급 분류에 상관없이 모든 품목에 대해 동일하며, 대행업체(기관) 변경 신청은 수입 허가 이후 180일 이내에 가능
- 2022년부터 판매용 수입 의료기기는 DI(Device Identifier, 의료기기 고유식별코드)와 PI(Production Identifier, 생산정보 식별코드)를 포함해야 함.
- 2016년 유해 폐기물 규정(Hazardous Wastes Rules, 2016)에 따라 중고제품 및 재활용된 인공호흡기는 수입 제한

○ 유통 구조

- 글로벌 기업의 경우 완제품 및 부품의 64%를 수입하고 일부는 인도에서 제조하여 납품하며,인도 내 생산기업은 현지 생산하여 유통업체를 통하거나 병원에 직접 납품하기도 함
- 외국 제조업체는 인도법인 또는 수입 업체를 통해 제품을 수입하여 제품 납품.
- 수입업체는 각 지역의 유통업체에 제품을 제공하고, 유통업체들은 의료 시설 영업 담당자를 선별. 이들은 대형 병원 및 개인병원을 방문 및 제품 설명을 통해 최종 주문 확보

인공호흡기 유통구조 도식



자료: KOTRA 뉴델리무역관 자료 종합

○ 관세

- HS Code-901920는 한-인도 CEPA 적용 항목

HS Code-901920 관세율

순서	구분	CEPA 적용	
		적용	미적용
①	기본관세	0%	7.5%
②	사회보장세	10%	10%
③	합산관세	①+①x② = 0%	①+①x② = 8.25%
④	IGST	12%	12%
⑤	총관부가세(③+④)	12%	20.25%

자료: Indiantradeportal

□ **시사점**

ㅇ 인도 정부, 의료부문 투자 장려
- 일일 평균 확진자 약 3만 명으로, 7월 17일 기준, 인도는 100만 3,832명의 확진자 발생 하는 등 인도의 코로나19 확진자는 급증하는 추세
- 정부는 인도 제조업을 장려하고자 2020년 4월에 의약분야에 1,000억 루피(한화 약 1조 6,000억 원) 인센티브 정책을 발표

ㅇ 인도 의료산업 진출 및 생산 가속화
- 호흡기 공급 부족으로, 제조 공장이 필요한 의료업계는 비관련 산업 분야 기업들과 협업하여 호흡기를 제조하는 등 필요 수요를 맞추기 위해 생산 가속화
- 의료산업분야의 외국인 투자 규모 또한 증가하는 추세.
- 인도 정부는 최근 주요 글로벌 의료기기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의사를 점검한 바 있음
- 최근 우리 기업이 인도의 265만 달러 규모의 중환자용 인공호흡기 공급 사업을 수주하는 등 우리 기업도 인도 현지 진출 진행 중

자료: GTA(Global Trade Atlas), 현지 언론(The Economic Times, Mumbaimirror), 인베스트인디아, 인도 상공부, 인도 관세청, KOTRA 뉴델리 무역관 자료 종합

출처 (KOTRA해외시장뉴스)

인증표준정보센터
KTR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